제52차 여성정책포럼
The 52nd Women's Policy Forum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Improving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and Promoting Support

일 시 2009. 3. 4(수), 14:00~17: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회의원 김금래
후 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Date March 4, 2009, Wednesday
Time 14:00-17:00
Venue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Host KWDI · Member of National Assembly Kumlae Kim
Sponsor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제52차 여성정책포럼
The 52nd Women's Policy Forum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Improving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and Promoting Support

일 시 2009. 3. 4(수), 14:00~17: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회의원 김금래
후 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Date March 4, 2009, Wednesday
Time 14:00-17:00
Venue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Host KWDI · Member of National Assembly Kumlae Kim
Sponsor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 Program

| | | | |
|---|---|---|---|
| 13:30-14:00 | 등 록 | | |
| 14:00-14:30 | 사 회 | 장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 | 인 사 말 | 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 | | 김금래 | 국회의원 |
| 14:30-16:00 | 사 회 자 | 허남순 | 한림대학교 교수 |
| | 발 표 |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 |
| | | 김혜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 안상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 | |
| |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 **외국의 미혼모 양육 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함의** | |
| | | 유연규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 | | **미국의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편견은 줄이고 지원 서비스는 늘리기** | |
| | | 셰릴 미첼 | 미국 버몬트대학 교수 |
| 16:00-16:40 | 토 론 | 박 숙 자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
| | | 김 은 영 | 한신대학교 초빙교수 |
| | | 홍 승 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 | 이 봉 주 | 서울대학교 교수 |
| 16:40-17:00 | 종합토론 및 폐회 | | |

# Program

| | | |
|---|---|---|
| 13:30-14:00 | **Registration** | |
| 14:00-14:30 | **Presider** | Hyekyung Chang<br>Director, Division of Planning Coordination, KWDI |
| | **Welcoming Address** | Taehyun Kim President, KWDI<br>Kumlae Kim Member of National Assembly |
| 14:30-16:00 | **Moderator** | Namsoon Huh Professor, Hallym University |
| | **Presentation** | *Korean attitudes toward Unmarried parents and Adoption*<br>Hyeyoung Kim Research Fellow, KWDI<br>SangSu Ahn Research Fellow, KWDI |
| | | *Is Adoption the Solution to the Plight of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br>Mijeong Lee Research Fellow, KWDI |
| | | *Welfare policies for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advanced countries - Implications for Korea*<br>Yunkyu Ryu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 | | *Building Support for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US: Reducing Stigma - Increasing Services: An Overview*<br>Cheryl Mitchell Professor, University of Vermont |
| 16:00-16:40 | **Discussion** | Bongjoo Lee Professor, Seoul University<br>Eunyoung Kim Professor, Hanshin University<br>Seungah Hong Research Fellow, KWDI<br>Sookja Park Deputy director general for family policy,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 |
| 16:40-17:00 | **Cross Discussion** | |

# Contents


발 표 1

◈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 1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 상 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 ····· 41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3

◈ 외국의 미혼모 양육 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함의 ····· 59

유 연 규 서울 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4

◈ Building Support for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US Reducing Stigma-Increasing Services: An Overview ····· 91

Cheryl Mitchel Professor, University of Vermont

◈ 발 표 1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 상 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Ⅰ.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의 출산은 대략 연간 6천 여명에서 1만 3천여 건 내외로 추산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이들 삶의 궤적에 대한 실태파악은 가능하지 않다. 이는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특질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를 통한 임신과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화된 결혼관계에 진입하지 않은 미혼남녀의 성경험과 이로 인한 자녀 출산은 공개될 수 없는 개인사인 동시에 개인, 특히 여성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성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개방적인 성문화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혼전 성경험에 대한 금기는 상당부분 완화되고 있다. 사랑이 전제된 성인남녀의 혼전 성관계에 관해서는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를 도덕적 차원에서 단죄하거나 부정시 하는 경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미혼으로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성 개인의 시민적, 모성적 권리를 부인하는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미혼모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낙태에 대한 유혹은 물론 출산 후 자녀양육의 포기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한국은 낙태비합법화 국가이면서도 적게는 일 년에 35만 건에서 많게는 150만 건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간 출산아(60-80만)의 수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흔히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식은 특정 집단이 소지한 속성이나 가치정향 또는 외재적인 특징을 근거로 사회성원들이 그들 집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의 부재 혹은 일정한 사회적 거리감을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활기회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물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박탈감과 차별감정을 유발하게 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미혼모의 경우에는 성규범에 대한 위반과 함께 유일하게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부여해온 신성한 가족의 경계 밖에서 출산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일탈자로 낙인받고 있다.

이러한 일탈자로서의 규정은 심리, 주관적인 측면에서 미혼모들을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간 상호작용이나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한 사회적 거리를 의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억압은 곧 미혼모들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지원의 욕구를 함구시키는 구조적 환경으로 작용하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록 대부분의 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의 정도와 포용의 방식은 곧 여성과 섹슈얼리티, 가족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차이에 의해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혼모에 대

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정도는 곧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지원방식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제주도 지역주민들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연구가 거의 유일한데, 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 543명의 태도를 조사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보편화된 가치와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발견된다(문의승, 임애덕, 2005).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미혼모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 역시 공통적으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와 그 이유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부 또는 모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 이들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를 살펴보고,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우선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편견과 한국인의 가족 및 성의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 Ⅱ.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 (1)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지표

미혼부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 가운데 2007년 주민등록표상의 광역시도 및 10세 연령대별, 성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표집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같이 광역시도별, 10세 연령대별, 성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한 할당표집한 이유는 전국의 광역시도 간 인구 분포의 편차가 심하여, 단순 비례할당의 경우, 지역 간 표본 차이가 커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곱근에 비례한 표집의 경우 그와 같은 인구 편차를 완화시킴으로써 각 지역 간 표집 오차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수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조사된 표본과 주민등록표상 인구수 간의 편차를 가중치로 조정하여, 전체 분석 시 각 표본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효과적인 표집을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무작위 표집에 의한 구, 시, 군을 선정하고 2번째 단계에서는 체계적 무작위 표집에 의한 동, 읍, 면을 추출하되, 선정된 지역에서의 가구는 면접원에 의한 무작위 표집의 방식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1개

구, 시, 군에서 최대 50표본을 넘지 않도록 구, 시, 군을 선정하고, 1개 동, 읍, 면에서는 최대 15표본을 넘지 않도록 동, 읍, 면을 추출하되 1가구 당 1인의 표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면접원은 추출된 해당 동, 읍, 면 지역에서 적격 응답자를 섭외하여 면접을 진행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1개동에서 2인까지 조사를 허용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10가구 간격을 두고 1인을 조사토록 하였다. 최종 추출된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명, %)

| | | 응답자 수(명) | 구성비 (%) |
|---|---|---|---|
| 전 체 | | 2,000 | 100.0 |
| 광역시도 | 서울 | 254 | 12.7 |
| | 부산 | 152 | 7.6 |
| | 대구 | 123 | 6.2 |
| | 인천 | 125 | 6.3 |
| | 광주 | 90 | 4.5 |
| | 대전 | 93 | 4.7 |
| | 울산 | 80 | 4.0 |
| | 경기 | 256 | 12.8 |
| | 강원 | 92 | 4.6 |
| | 충북 | 94 | 4.7 |
| | 충남 | 108 | 5.4 |
| | 전북 | 104 | 5.2 |
| | 전남 | 106 | 5.3 |
| | 경북 | 128 | 6.4 |
| | 경남 | 138 | 6.9 |
| | 제주 | 57 | 2.9 |

한편, 설문지는 본원의 연구진이 사전에 구성하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으며, 가구단위의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된 본 조사는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2009년 1월 15일에서 2월 15일 동안 약 한 달에 걸쳐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최종 2000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 과정에서는 2007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인구와 실제 조사된 표본의 광역시도별, 10세 연령대별 및 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Spsswin Ver.1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문항의 주요 지표

| 차원 | 하위영역 | 문항수 |
|---|---|---|
| 결혼에 대한 견해 | (4문항4점척도) | 1 |
| 가족에 대한 견해 | (5문항4점척도) | 1 |
| 성의식 | (5무항4점척도) | 1 |
| 가부장적/개방적 가족의식 | (7문항4점척도) | 1 |
| 중요한 가치 | (19문항5점척도) | 1 |
| 사회적 차별 |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6문항4점척도) | 7 |
| | 대상자유형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 (9문항4점척도) | |
| | 차별경험 | |
| | 차별목격 | |
| 가족형태에 따른 호감도 |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6문항5점척도) | 5 |
| | 대상자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6문항4점척도) | |
| | 지인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6문항4점척도) | |
| | 혼전성태도와 수용도(6문항5점척도) | |
| | 성의식과 수용도(4문항5점척도) | |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미혼모와의 친밀도(2문항5점척도) | 16 |
| | 미혼모/부에 대한 가치판단(10문항4점척도) | |
| | 미혼모/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5문항4점척도) | |
| | 미혼부/모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인식(9문항4점척도) | |
| | 입양에 대한 인식(10문항4점척도) | |
| | 미혼모 자녀에 대한 태도 | |
| | 미혼부 자녀에 대한 태도 | |
| | 미혼모/부 자녀의 어려움 | |
| | 아이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 | |
| | 미혼모에 대한 고정관념(6문항4점척도) | |
| | 미혼모/부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 | |
| | 미혼모/부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 |
| | 미혼모/부 차별해소 주체 | |
| 남녀평등의식 | (12문항4점척도) | 1 |
| 부모의 전통의식 | (8문항4점척도) | 2 |
| | 성장기 동거가족 | |
|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약자 책임 주체 | 2 |
| | 사회적 약자 지원우선순위 | |
| 인구사회학적특성 | 성별 | 11 |
| | 연령 | |
| | 성장지역 | |
| | 학력 | |
| | 종교 | |
| | 혼인상태 | |
| | 동거가족 | |
| | 직업 | |
| | 월평균 가구소득 | |
| | 주관적 계층의식 | |

###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별로 구분하여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이들의 연령이나 교육수준 및 결혼 과 직업지위, 월평균 가구소득, 종교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40대(25.3%, 24.9%)와 30대(24.9%, 24.3%)가 비슷한 분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21.4%, 20.5%), 50대(17.7%, 18.0%), 60대(10.7%,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대졸이상'이 48.4%(48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41.7%), '중졸'(7.4%), '초졸 이하'(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고졸'이 54.7%(53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대졸 이상'(31.4%), '중졸'(8.8%)의 순으로 남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단위: 명, %)

| 구 분 | | 남성 | 여성 | 전체 |
|---|---|---|---|---|
| 연령 | 20대 | 216(21.4) | 203(20.5) | 419(20.9) |
| | 30대 | 251(24.9) | 241(24.3) | 492(24.6) |
| | 40대 | 256(25.3) | 247(24.9) | 503(25.1) |
| | 50대 | 179(17.7) | 178(18.0) | 357(17.8) |
| | 60대 | 108(10.7) | 122(12.3) | 230(11.5) |
| | 계 | 1,010(100.0) | 990(100.0) | 2,000(100.0) |
| 교육수준 | 초졸이하 | 25(2.5) | 50(5.1) | 75(3.8) |
| | 중졸 | 75(7.4) | 87(8.8) | 162(8.1) |
| | 고졸 | 421(41.7) | 539(54.7) | 960(48.1) |
| | 대졸이상 | 488(48.4) | 310(31.4) | 798(40.0) |
| | 계 | 1,009(100.0) | 986(100.0) | 1,995(100.0) |

다음으로 이들의 결혼지위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결혼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4%, 79.7%). 결혼한 경험이 있는 남녀의 대부분이 현재 법적으로 기혼상태에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동거,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결혼지위

(단위: 명, %)

| 구 분 | | 남성 | 여성 | 전체 |
|---|---|---|---|---|
| 결혼 지위 | 미혼 | 279(27.6) | 201(20.3) | 480(24.0) |
| | 기혼 | 708(70.0) | 763(77.1) | 1,471(73.5) |
| | 동거(사실혼) | 7(0.7) | 0(0.0) | 7(0.3) |
| | 별거 | 1(0.1) | 5(0.5) | 6(0.3) |
| | 이혼 | 11(1.1) | 5(0.5) | 16(0.8) |
| | 사별 | 5(0.5) | 16(1.6) | 21(1.0) |
| | 계 | 1,010(100.0) | 990(100.0) | 2,000(100.0) |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이 29.7%(30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다음으로는 '관리/사무직'(25.4%), '기술/기능직'(14.2%) 순임에 비해, 여성은 '전업주부'가 35.3%(349명), '서비스/판매직'(35.2%), '관리/사무직'(1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직업지위

(단위: 명, %)

| 구 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전문/경영직 | 92(9.1) | 43(4.3) | 135(6.8) |
| 관리/사무직 | 257(25.4) | 131(13.2) | 388(19.4) |
| 서비스/판매직 | 300(29.7) | 348(35.2) | 648(32.4) |
| 기술/기능직 | 143(14.2) | 32(3.2) | 175(8.8) |
| 농/임/어업 | 25(2.5) | 12(1.2) | 37(1.9) |
| 단순/노무직 | 28(2.8) | 8(0.8) | 36(1.8) |
| 학생 | 57(5.6) | 67(6.8) | 124(6.2) |
| 전업주부 | 0(0.0) | 349(35.3) | 349(17.5) |
| 무직/기타 | 108(10.7) | 0(0.0) | 108(5.4) |
| 계 | 1,010(100.0) | 990(100.0) | 2,000(100.0) |

이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0만원대'가 각각 34.4%(348명), 31.1%(30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대'(23.6%, 23.2%), '400만원대'(16.6%,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남성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여성에 비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남녀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값은 통계청(2007)에서 밝힌 1인 이상 전 가구 평균 가계소득인 약 290(2,895,756)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대상 남녀의 70% 가 20-40대, 즉 상대적으로 소득획득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와 현재 기혼상태에 있는 2인 이상의 가구가 다소 과대 표집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

| 구 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200만원 미만 | 100(9.9) | 111(11.2) | 211(10.6) |
| 200만원대 | 239(23.6) | 229(23.2) | 468(23.4) |
| 300만원대 | 348(34.4) | 307(31.1) | 655(32.8) |
| 400만원대 | 168(16.6) | 177(17.9) | 345(17.3) |
| 500만원 이상 | 156(15.4) | 164(16.6) | 320(16.0) |
| 계 | 1,010(100.0) | 989(100.0) | 1,999(100.0) |
| 평균(만원) | 337.21 | 337.93 | 337.5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계층귀속의식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남녀 각각 73.0%(737명), 73.3%(7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층'이 각각 24.8%(250명), 23.4%(232명)로 나타나는데 비해, '상층'은 모두 3% 이하에 불과했다. 즉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 응답자 스스로가 중간계층 지향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계층의식

(단위: 명, %)

| 구 분 | 남성 | 여성 | 전체 |
|---|---|---|---|
| 하층 | 250(24.8) | 232(23.4) | 482(24.1) |
| 중간층 | 737(73.0) | 726(73.3) | 1,463(73.2) |
| 상층 | 22(2.2) | 33(3.3) | 55(2.8) |
| 계 | 1,010(100.0) | 990(100.0) | 2,000(100.0) |

끝으로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도시'가 각각 45.3%, 4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도시'(39.2%, 38.3%), '농어촌'(15.5%, 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와 성장지

(단위: 명, %)

| 구 분 | | 남성 | 여성 | 전체 |
|---|---|---|---|---|
| 거주지 | 대도시 | 457(45.3) | 463(46.7) | 920(46.0) |
| | 중소도시 | 396(39.2) | 380(38.3) | 776(38.8) |
| | 농어촌 | 156(15.5) | 148(14.9) | 304(15.2) |
| | 계 | 1,010(100.0) | 990(100.0) | 2,000(100.0) |

# Ⅲ. 조사결과 분석

## 1.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그동안 미혼모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미혼모들 역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과 함께 편견해소에 대한 강한 희구를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그간의 이중적인 성규범과 가족중심적 사고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혼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당연하게 수용하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하며, 얼마만큼의 거리감을 가지고 차별하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혼모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를 살펴보기 위해 흔히 미혼모를 낙인해온 몇 가지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한국인들은 대체로 미혼모의 내적인 자질이나 성적인 부도덕성보다는 이들의 판단력과 책임감의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모는 성격에 결함이 있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기 보다는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출산을 하였다는 점에서 판단력의 부족이나 책임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가 됨으로써 이들이 자활능력이 떨어진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약 44%의 응답자만이 동조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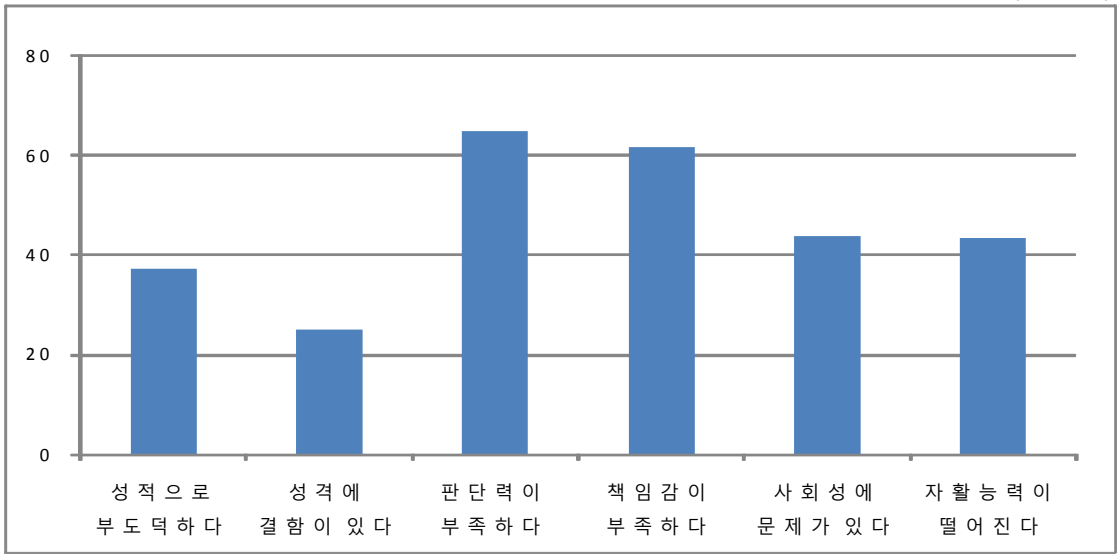


주: 적극 동의와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을 합한 비율

**[그림 1]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응답자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의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정도가 증가하며, 특히 책임감의 부재와 판단력의 부족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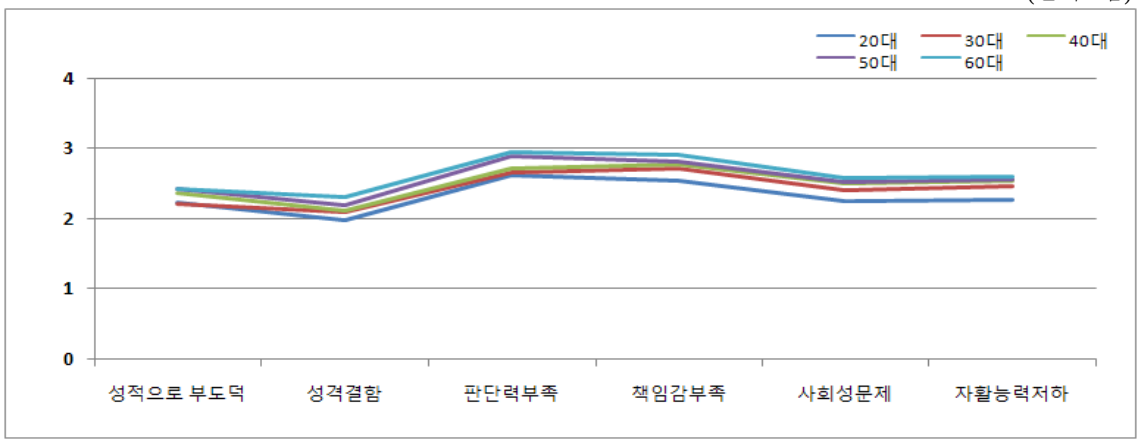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1: 절대 동의하지 않음, 4: 적극 동의함).

**[그림 1-1] 연령별 분포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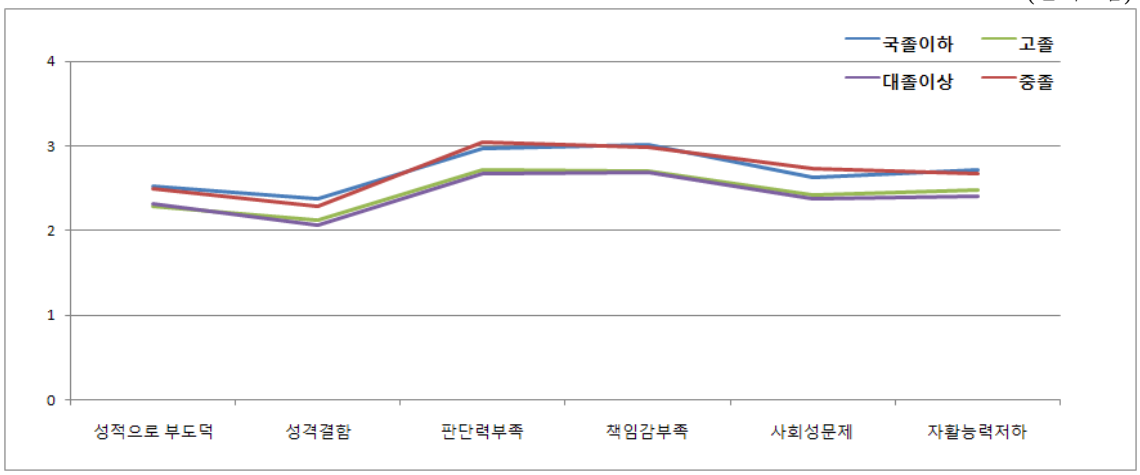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1: 절대 동의하지 않음, 4: 적극 동의함).

**[그림 1-2] 교육수준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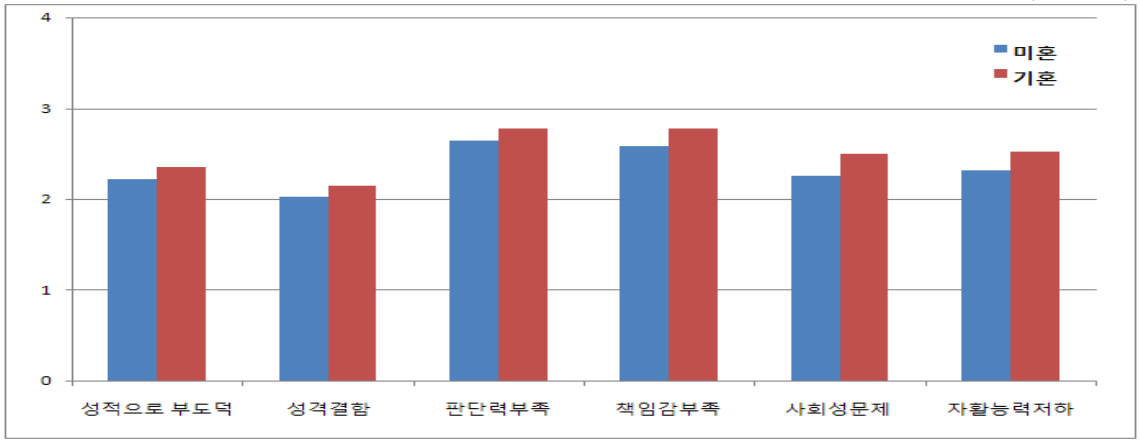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1: 절대 동의하지 않음, 4: 적극 동의함).

**[그림 1-3] 혼인상태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동의정도**

이같은 판단부족이나 책임감의 부재를 지적하는 한국인의태도는 무엇보다 보수적인 성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사결과에서는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혼전 성관계에 관해서만 동의하고 있을 뿐 실제로 혼전성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혼전동거와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이 약속되어 있고 사랑이 전제된다면 혼전성관계는 가능하다할지라도, 임신과 출산은 결혼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혼모들에 관해서는 성적인 부도덕성이 아니라 바로 책임성이나 판단력의 부족을 들어 이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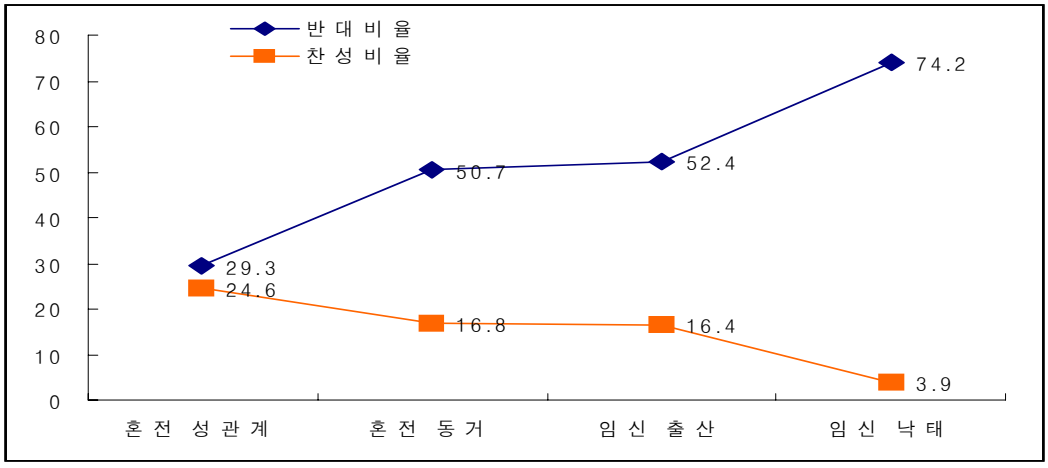


**[그림 2] 혼전 성관계 및 임신출산에 대한 동의정도**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혼모나 미혼부는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과 자녀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 특히 미혼모의 사회적 보호와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미혼모(미혼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미혼모보다는 미혼부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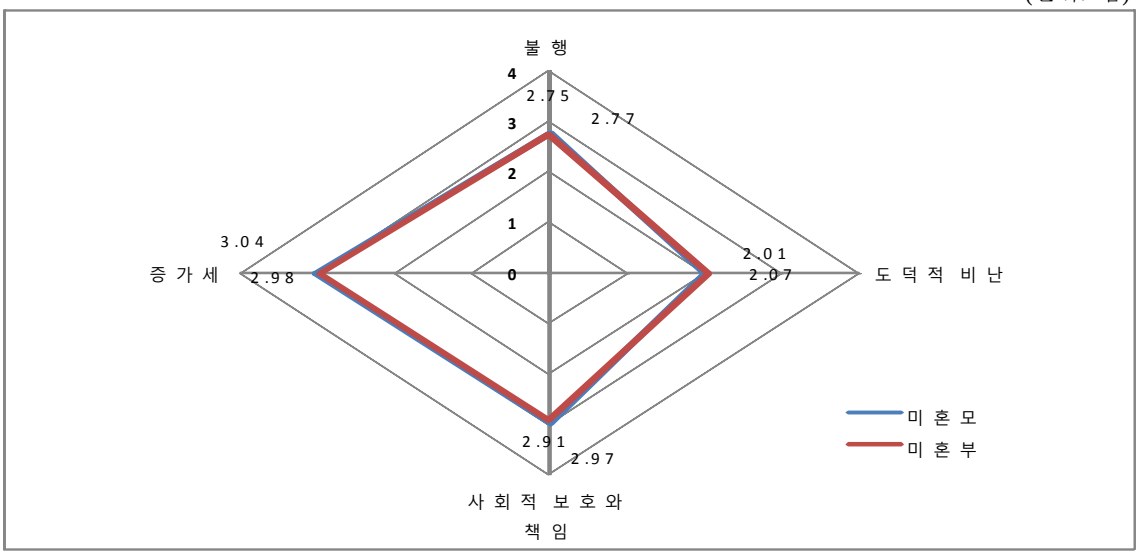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그림 3] 미혼부·모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

## 2. 미혼부모에 대한 수용도와 사회적 거리

대체로 기성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소수집단인 대상을 집단범주에 근거하여 고정관념화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탐구에 치중함으로써 특정의 상황에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집단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귀인하게 되는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더욱이 편견이나 차별의 문제는 차별당하는 집단의 내적 특질이나 이들이 체감하는 차별의 정도를 규명하기 보다는 사회성원들이 소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해법마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미혼모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차별감 보다는 사회성원들은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에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1) 미혼모에 대한 차별지각

먼저 미혼모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함으로써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미혼모에 대한 차별지각의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집단은 동성애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미혼모, 외국인노동자, 미혼부, 장애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특히 동일하게 제도적인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된 미혼부는 미혼모에 비해 사회적 차별인식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성애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p<.01$), 그 밖에 조사대상자의 연령이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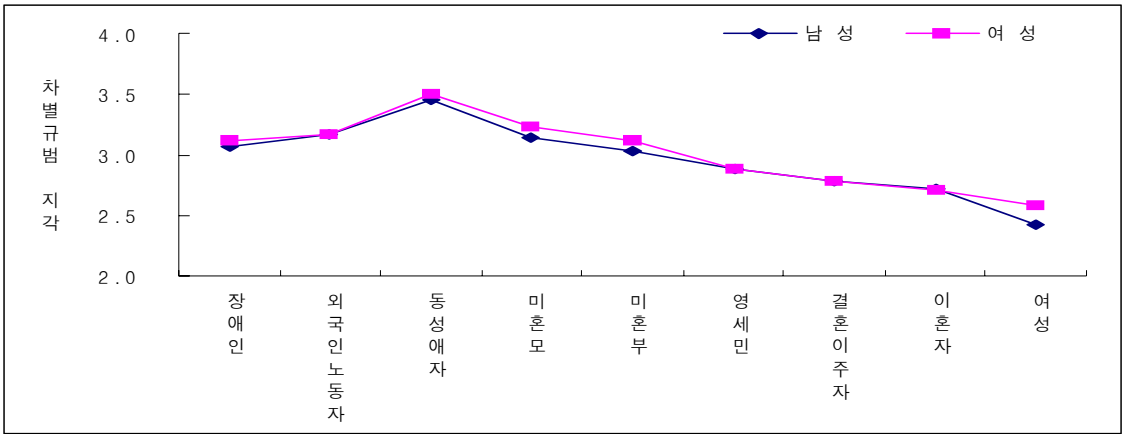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함(1: 전혀 없다, 4: 매우 많다).

**[그림 4]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

〈표 9〉 성별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차별지각

(단위: 점)

| | 남성 | | 여성 | | 전체 | |
|---|---|---|---|---|---|---|
| 장애인 | 3.07 | (.67) | 3.12 | (.71) | 3.09 | (.69) |
| 외국인노동자 | 3.16 | (.75) | 3.17 | (.74) | 3.17 | (.74) |
| 동성애자 | 3.45 | (.73) | 3.50 | (.71) | 3.48 | (.72) |
| 미혼모 | 3.14 | (.72) | 3.23 | (.73) | 3.18 | (.73) |
| 미혼부 | 3.03 | (.72) | 3.11 | (.72) | 3.07 | (.72) |
| 영세민 | 2.88 | (.85) | 2.88 | (.83) | 2.88 | (.84) |
| 결혼이주자 | 2.78 | (.77) | 2.78 | (.78) | 2.78 | (.77) |
| 이혼자 | 2.72 | (.77) | 2.70 | (.75) | 2.71 | (.76) |
| 여성 | 2.42 | (.75) | 2.59 | (.77) | 2.50 | (.76)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함(1: 전혀 없다, 4: 매우 많다).

그리고 이같은 차별은 이들 집단의 다양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컨대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인식된 동성애 가족이나 미혼모의 자녀양육은 실제로 상당한 고난을 동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의 경우 차별받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다는 진술보다는 이혼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우며, 이것보다는 미혼모로서 혹은 미혼부로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다소 증가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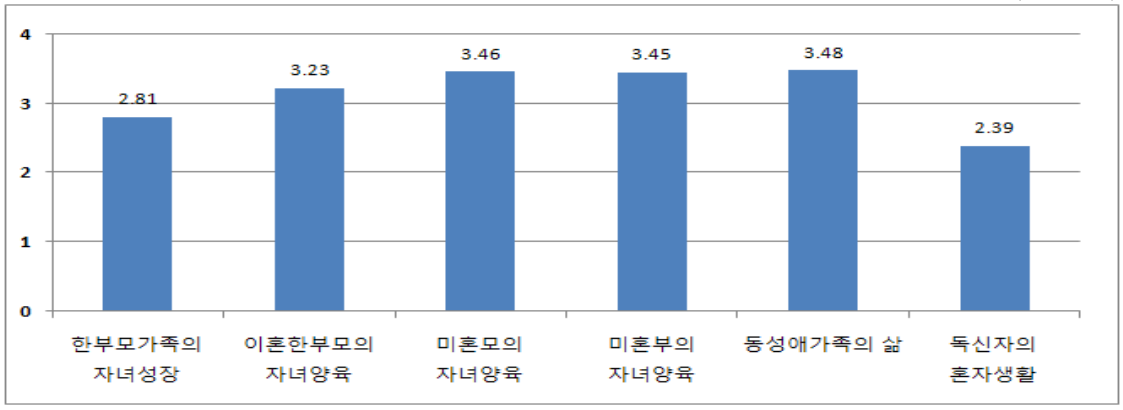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이 더 어렵다고 인식함(1: 전혀 힘들지 않다, 4: 매우 힘들다).

[그림 5]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

### (2)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거리감

미혼부모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기 위해 미혼부모를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보고,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다양한 가족들과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이웃으로서의 거부감'은 5점 척도(5. 이사 가도록 요구하겠다. - 1. 집안끼리 교류하는 사이로 지내겠다)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은 다양한 가족 형태별로 '이웃으로서의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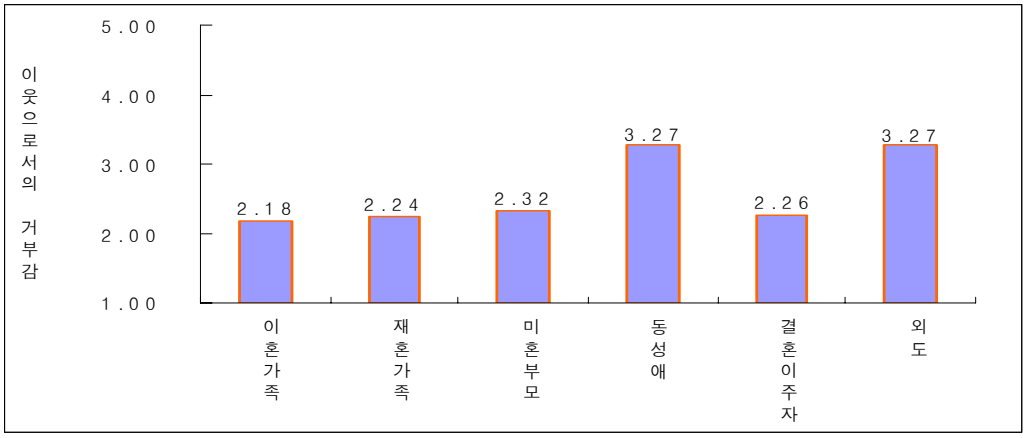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웃으로서의 거부감**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웃으로서의 거부감은 동성애, 외도문제 가정, 미혼부모가족 순으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가족이나 재혼가족 대해 부정적 태도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부모'에 대한 이웃으로서의 거부감은 재혼가족($t=6.12$, $p<.001$)에 비해서 그리고 결혼이주자($t=4.89$, $p<.001$)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피험자 내 반복측정 변수에 관한 검증방법인 대응표본 즉 paired samples t-test에 의한 검증 결과임).

이들 가족들에 대한 거부감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미혼부모가족에 대해서만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t=2.09$, $p<.04$). 즉 남성이 $M=2.37(SD=.77)$로 여성에 $(M=2.30, SD=.77)$에 비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연령별로도 살펴본 결과, 미혼부모에 대해서 20대와 50대간의 거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 상태별로도 비교해 본 결과(아래 그림 참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동성애 가족'이나 '외도문제를 가진 가족'에 대해서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인식차이가 컸으며, 미혼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혼 응답자보다 기혼 응답자의 거부감이 유의하

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2.27 vs. M=2.36).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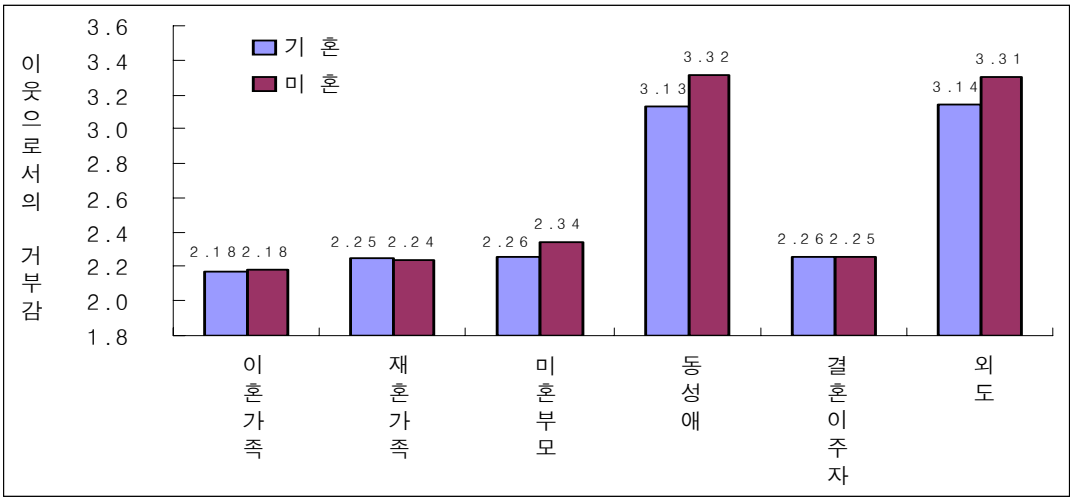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6-1] 혼인상태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웃으로서의 거부감**

다음으로는 다양한 성경험이나 결혼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그러한 사람들을 결혼 상대자로서의 교제를 권유하는 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교제를 권유하지 않겠다'는 정도를 통해 거부감을 알아본 결과, [그림 7]와 같이 나타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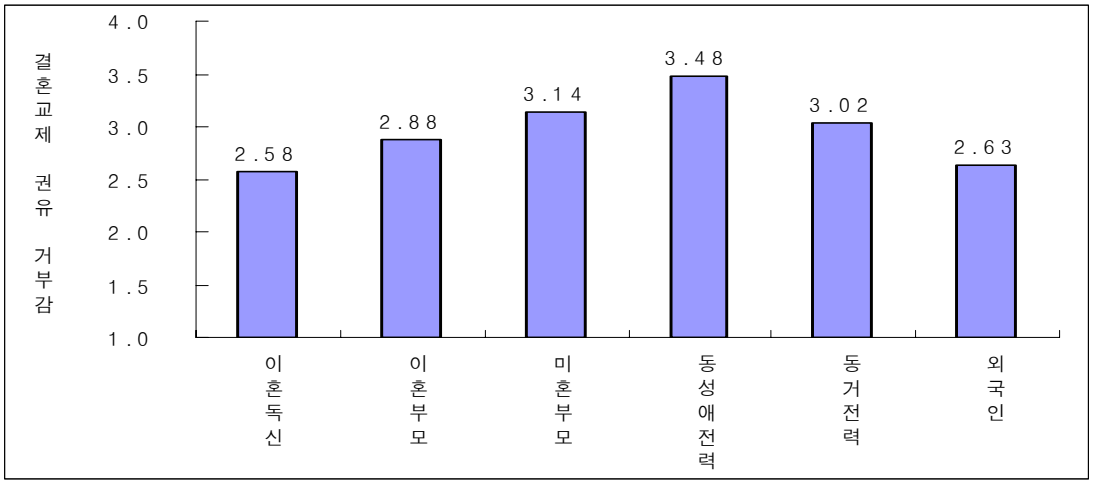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1:적극적으로 교제-4:적극적으로 교제를 말린다)

**[그림 7] 다양한 성·결혼경험자들에 대한 교제상대자로서의 거부감**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성이나 결혼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에 대해서는 수용적이기 보다는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동성애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녀가 있는 미혼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나며 동거나 유자녀의 이혼전력 또한 거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혼부모에 대한 교제권유의 거부감은 동거전력이 있거나 이혼 유자녀인 사람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t=18.86, p<.001; t=6.84, p<.001).

이를 성별로 구분해 본 결과, 교제 권유의 거부감에 있어서 성별간의 차이와 순서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혼독신자'나 '이혼 유자녀자'에 대한 교제권유의 거부감은 성차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이들에 대한 권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연령별로 교제 권유의 거부감을 살펴본 결과도 역시 '결혼 상대자로서의 거부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외국인'을 결혼 상대자로 권유하는 것에 있어서 연령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20대의 경우 외국인을 결혼 상대자로 권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M=2.41, SD=.73)이 가장 낮았음을 볼 수 있었다.

혼인상태별로 교제 권유의 거부감 역시 동성애자 전력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미혼부모에 대한 거부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거부감은 기혼이나 미혼 응답자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및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혼 응답자와 미혼 응답자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미혼 응답자가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결혼 상대자로서 이들에 대한 거부감을 알아보기 위해 조건이 같은 경우, 결혼 상대자로서 수용정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거부감의 정도는 4점 척도로서 '1. 결혼상대로서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 4. 결혼상대로서 주저 없이 포기 하겠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거부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동성애 전력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높았고,'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둔 미혼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부모에 대한 거부감'은 '동거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7.05, p<.001).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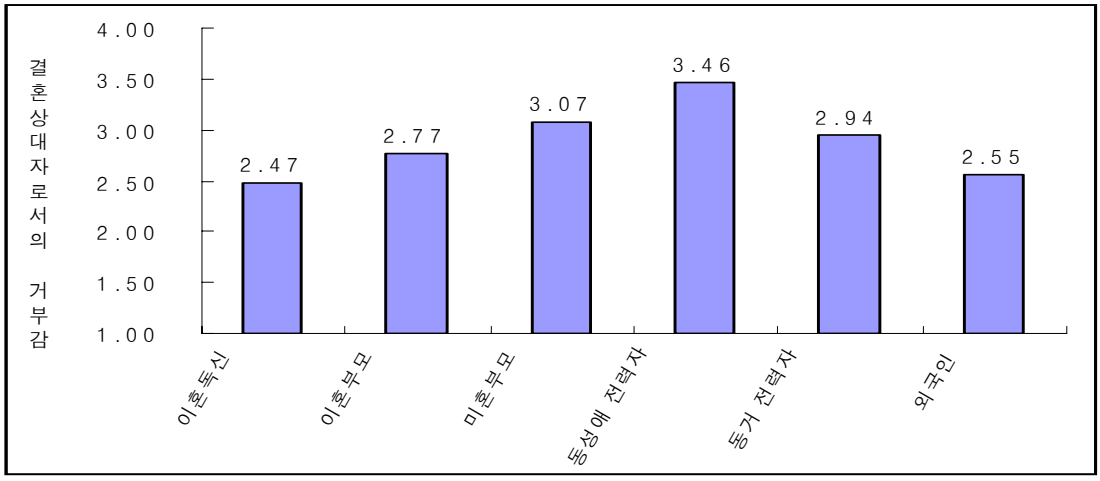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8] 다양한 성·결혼경험자들에 대한 결혼상대자로서의 거부감**

그러나 결혼상대자로서의 거부감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결혼상대자를 보는 태도는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결혼 상대자를 보는 태도를 연령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외국인'을 결혼상대자로 보는 태도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즉 젊은 연령층일수록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수록 거부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그림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상태별로 다양한 결혼 상대자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본 결과, '이혼 독신자', '이혼 유자녀자''미혼 유자녀자'에 대한 거부감은 혼인상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성애 전력자, 동거 전력자,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에 있어서는 기혼 응답자와 미혼 응답자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에 대한 기혼 응답자와 미혼 응답자간의 상당한 인식차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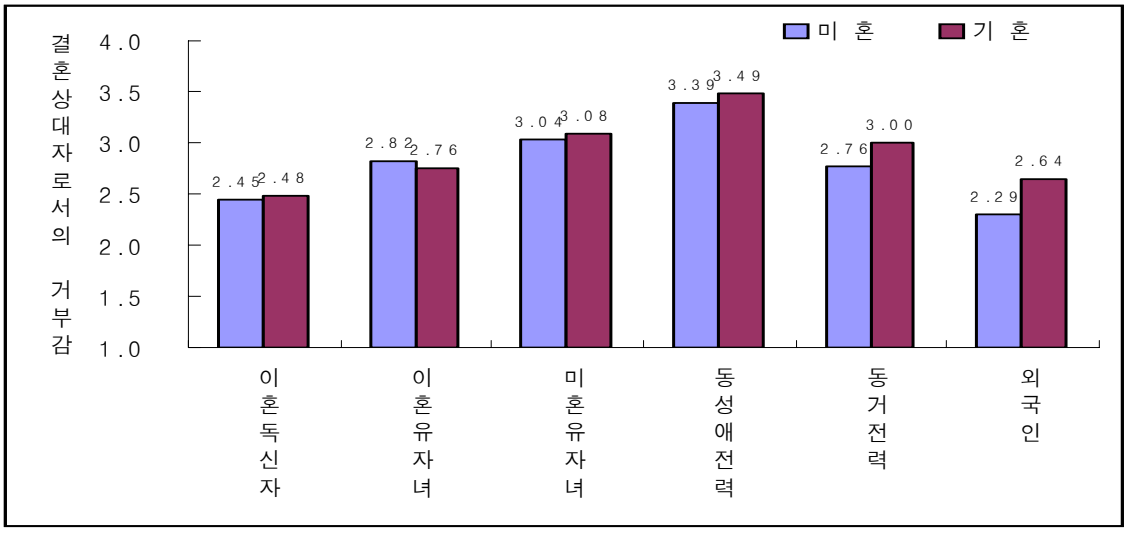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8-1] 혼인상태별 다양한 성·결혼경험자들에 대한 결혼상대자로서의 거부감**

그러하다면, 특별한 관계 맺기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은 미혼모 가족에 대한 어느정도의 사회적 거리감으로 표출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사회적 거리감은 특정 집단 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또는 주관적 거리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집단과 어느 선까지의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즉 '수용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로 측정하게 된다(Borgardus, 1928). Bogardus는 사회적 거리개념을 적용하여 최초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상이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것은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지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태도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Bogardus와 Westie 등의 측정문항을 응용하는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란 공적 관계에서 사적 관계로, 혹은 상대적으로 먼 관계인'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부터 가족관계의 허용을 의미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김상학, 200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와 '동네 이웃으로서의 관계'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응답자들이 미혼모에 대해서 갖는 관계의 거리감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응답비율을 살펴보았는데, [그림 9]는 두 유형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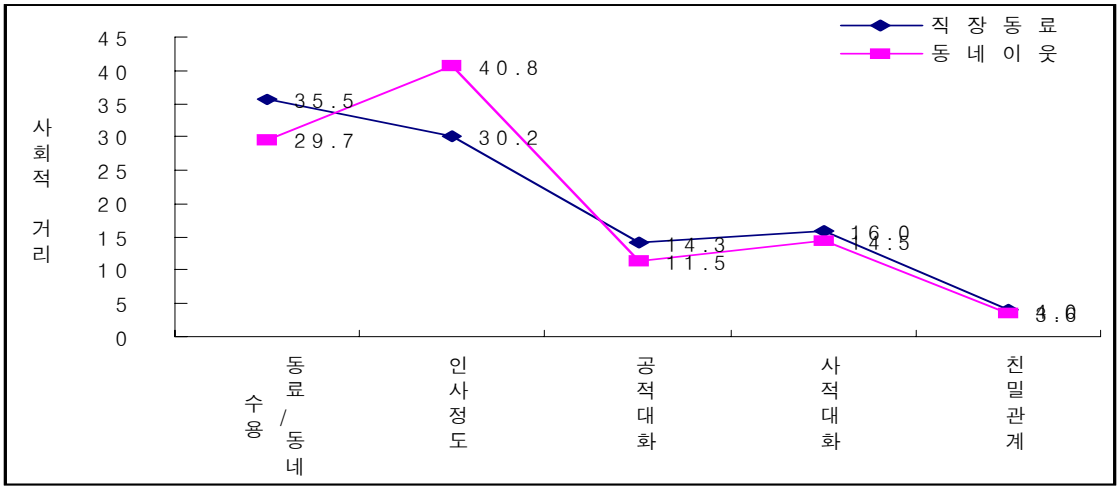


**[그림 9]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

[그림 9]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대체로 표면적인 관계만을 허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답자의 65.7%가 직장동료로서 인사정도만 하는 사이로 지내겠다는 응답을 보였고, 70.5%는 동네이웃으로서 인사정도만하고 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공식적 사적교류나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0.0%와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학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연속변수의 가정에 따라 성별, 혼인상태, 연령별, 교육수준 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성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살펴본 결과, 직장동료로서의 사회적 거리에서만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다($t=2.03$, $p<.05$). 즉 남성은 $M=2.17(SD=1.16)$이었고, 여성은 $M=2.28(SD=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비교해 본 결과, 미혼 응답자에 비해서 기혼 응답자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직장동료로서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동네이웃으로서의 거리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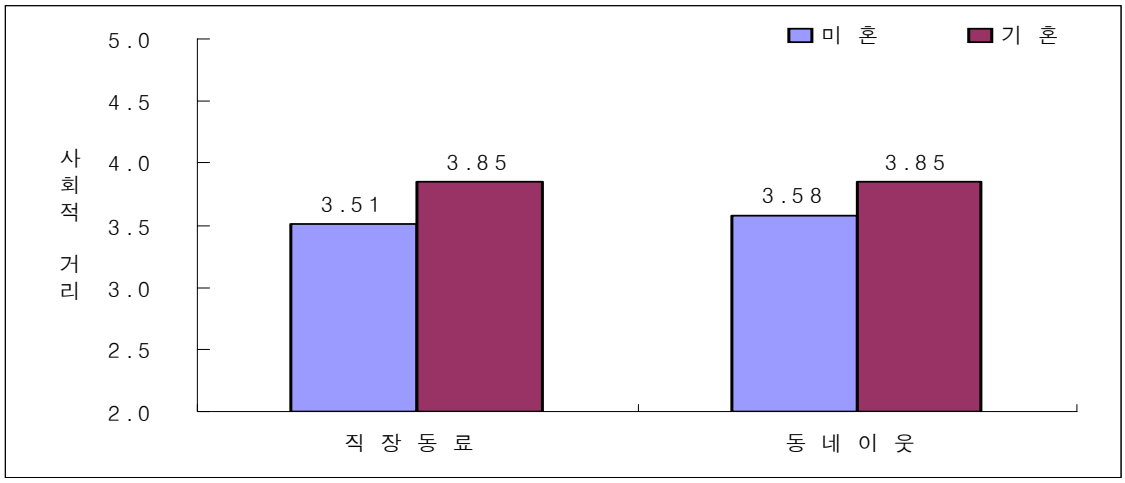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9-1]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9-2] 와 같은데, 연령대별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 본 결과, 두 유형의 사회적 거리감 모두 20대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였고, 30대와 40대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별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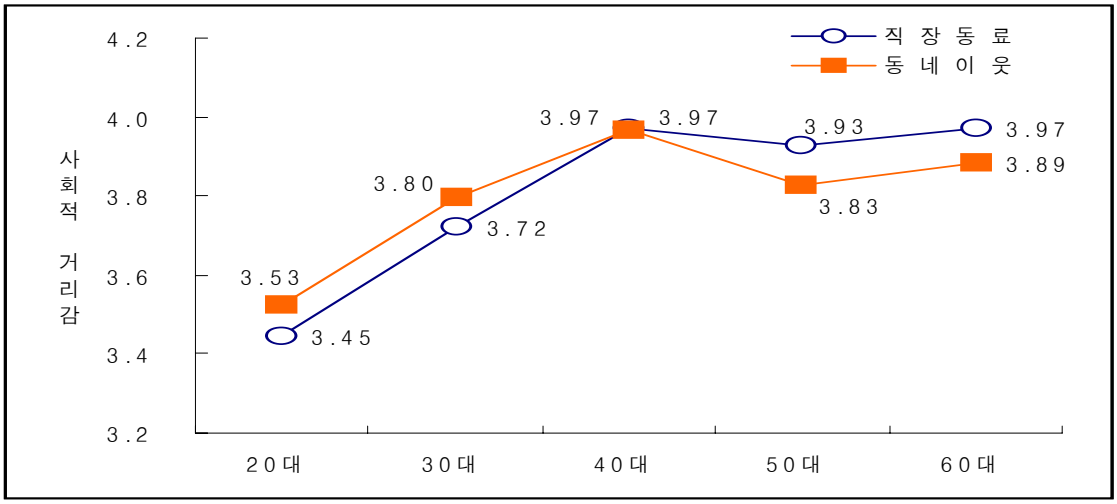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9-2]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

끝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요인이 사회적 거리를 가장 잘 예언하는 요인인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선 각 변수들에 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감은 직장동료로서의 관계와 동네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합산한 뒤, 그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9>는 본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 변수들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예측 변수들의 상관관계**

| | 사회적 거리 | HS | BS | 성의식 | 성역할 | 가족의 다양성 |
|---|---|---|---|---|---|---|
| HS(적대적 성차별의식) | .080*** | | | | | |
| BS(온정적 성차별의식) | .095*** | .449*** | | | | |
| 성의식 | .089*** | .106*** | .137*** | | | |
| 성역할의식 | .118*** | .461*** | .305*** | .322*** | | |
| 가족다양성 | −.051* | −.022 | −.031 | −.310*** | −.098*** | |
| 가족관 | .109*** | .209*** | .184*** | .298*** | .387*** | −.211***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의식이 보수적일 수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갖고 있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 역시 사회적 거리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 보호의 대상이고, 성역할 분업적 태도를 가지며, 친밀한 이성애의 대상으로 여성을 규정하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높게 가질수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한부모 가족이나 양부모에 대한 수용성,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관용성을 가질수록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 예측변수들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상대적 보다 잘 예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즉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강하게 갖고 있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 B | 오차 | Beta | t | p |
|---|---|---|---|---|---|
| (Constant) | 2.718 | .305 | | 8.921 | .000 |
| 성의식 | .048 | .057 | .022 | .840 | .401 |
| 가족다양성 | −.038 | .055 | −.017 | −.683 | .495 |
| 가족가치관 | .132 | .061 | .058 | 2.173 | .030 |
| 성역할 | .045 | .080 | .016 | .560 | .576 |
| HS | .015 | .057 | .008 | .269 | .788 |
| BS | .178 | .061 | .079 | 2.933 | .003 |

### 3. 미혼모·부 발생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본인의 성인가족이나 친지가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이 질문은 본인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및 친지성원의 경우를 가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의견을 물어봄으로써, 응답자의 미혼모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이를 위해 아이 아버지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38.4%), “아이 아버지가 출산에 동의하고, 양육비 제공을 약속할 경우에만 출산하라고 조언한다”(22.3%),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고 낙태하라고 조언한다”(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매우 흥미있는 결과이다. 우선 헤어진 경우라도 뒤늦게 임신사실이 확인되면 아이 아버지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임신이 결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결혼문화의 보수성과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다. 이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이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생활의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가(41.6%) 여성보다(35.1%) 훨씬 높게 나타나 남성들의 가부장적 결혼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연령별로도 20대(31.9%), 30대(39.8%), 40대(37.2%), 50대(41.9%), 60대(44.1%) 등의 차이가 나타나, 젊은 세대보다는 높은 연령대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재미있는 현상은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32.6%) 보다 기혼에서(40.2%) 결혼하라는 조언에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더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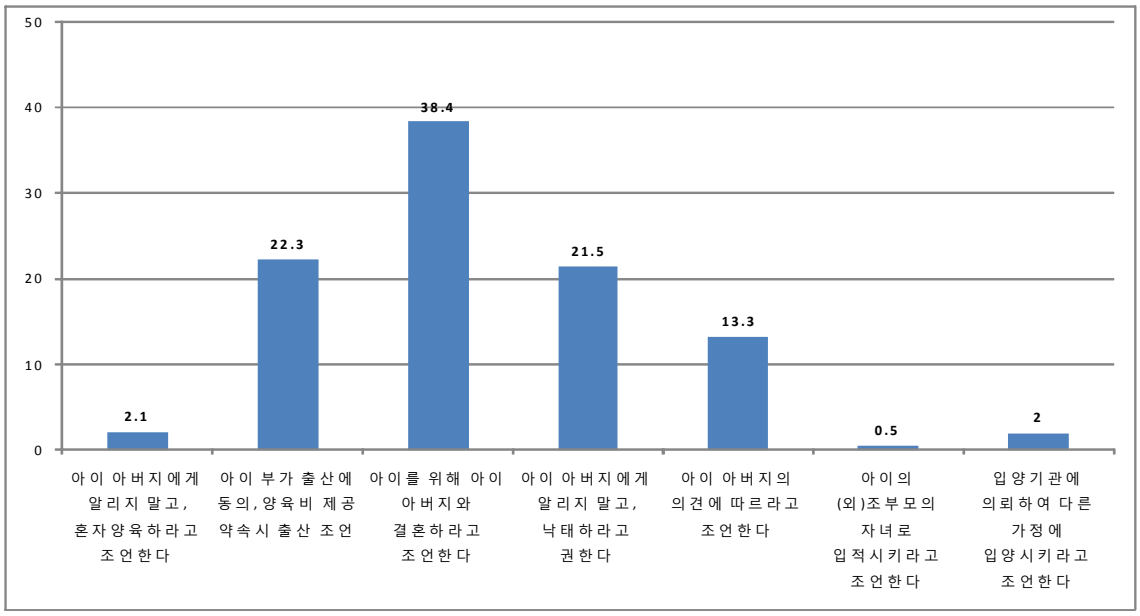


**[그림 10]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확인하게 된 경우 조언 내용**

### (1) 혼전임신에 대한 자녀연령별 · 성별 대응방안

다음으로는 혼전임신에 대한 자녀연령별 · 성별 대응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10대 청소년 딸과 아들, 20대 딸과 아들의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 및 의견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의 혼전임신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과 성이 중요한 차이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된 질문이다.

우선 딸의 경우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한 후 낙태시킨다”(36.6%)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없이 낙태시킨다”(25.3%), “두 자녀를 결혼시켜 부모 밑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양육하는 방안보다는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 혹은 상의없이도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을 더 우선적인 방법으로 꼽고 있었다.

한편 10대 아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의 부모와 상의한 후 낙태시킨다”(45.1%)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두 자녀를 결혼시켜 부모 밑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23.4%), “여자친구의 부모와 상의없이 낙태시킨다”(14.6%)의 순서로 나타났다.

10대 아들의 경우에는 낙태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 정도나 나온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에 대한 응답비율도 23.4%나 나타나, 10대 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딸의 부모입장에서는 딸이 미혼모가 되기보다는 아예 임신사실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아들의 부모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임신사실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 명 가운데 두 명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대조적인 태도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성(sexualtiy) 영역에 남아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즉 딸의 경우는 미혼모 신분으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만, 아들의 경우는 혼전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딸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응답자의 1/5이 결혼을 시켜 아이를 낳아 키우도록 한다고 응답한 것은 아들의 결혼 전 임신 및 출산에 대해서는 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사회분위기와 이에 편승하는 개인적 가치, 그리고 아들의 자식이라는 혈연에 대한 집착 등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 이 문제를 20대 미혼 아들과 딸의 경우로 대치할 경우에 나타난 결과는 10대의 경우와는 다르다. 우선 딸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두 자녀를 결혼시켜, 부모 밑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48.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적으로 딸의 의사를 존중한다”(24.8%),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한 후 낙태시킨다”(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두 자녀를 결혼시켜, 부모 밑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51.5%)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적으로 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27.6%), “여자친구의 부모와 상의한 후 낙태시킨다”(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딸과 아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도록 한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아들 및 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딸에 비해 아들의 의사존중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아들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부모로서의 기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20대 자녀의 경우는 10대 자녀에 비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자녀들의 권리와 자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딸 혹은 아들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견도 24.8%, 27.6%로 각각 나타나 성인자녀의 임신 및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로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읽을 수 있었다.

〈표 12〉 자녀의 성 · 연령별 혼전임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 없이 낙태시킨다 | 남자친구의 부모와 상의한 후, 낙태시킨다 | 두 자녀를 결혼시켜, 부모 밑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 | 출산 후, 남자친구 가정에서 키우게 한다 | 출산 후, 입양기관을 통해 다른 가정에 입양시킨다 | 출산토록 하고, 아이를 나의 자녀로 입적시킨다 | 전적으로 딸의 의사를 존중한다 | 기타 | 전체 |
|---|---|---|---|---|---|---|---|---|---|
| 10대 딸 | 506 (25.3) | 732 (36.6) | 428 (21.4) | 35 (1.7) | 41 (2.1) | 26 (1.3) | 218 (10.9) | 15 (0.8) | 2,000 (100.0) |
| 10대 아들 | 291 (14.6) | 901 (45.1) | 467 (23.4) | 20 (1.0) | 37 (1.8) | 38 (1.9) | 222 (11.1) | 23 (1.2) | 2,000 (100.0) |
| 20대 딸 | 180 (9.0) | 284 (14.2) | 970 (48.5) | 37 (1.8) | 8 (0.4) | 4 (0.2) | 496 (24.8) | 22 (1.1) | 2,000 (100.0) |
| 20대 아들 | 111 (5.5) | 241 (12.1) | 1,030 (51.5) | 19 (1.0) | 14 (0.7) | 12 (0.6) | 552 (27.6) | 19 (0.9) | 1,998 (100.0) |

결과적으로, 혼전임신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는 자녀의 성과 연령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의 해결방안에 대한 태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10대의 경우에는 낙태를 시켜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대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시켜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의 임신은 아직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나이에 부모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0대 자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혼전임신에 대하여 부모의 태도도 "전적으로 딸(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견이 20대에서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10대의 경우에는 매우 낮게 나타나서, 10대 자녀에 대해서는 임신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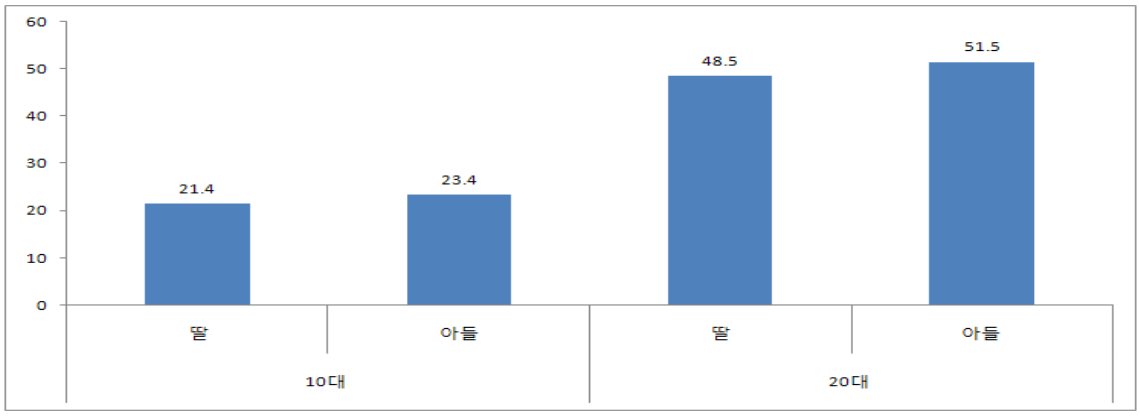


[그림 11] 자녀의 성 · 연령별 혼전임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 "결혼시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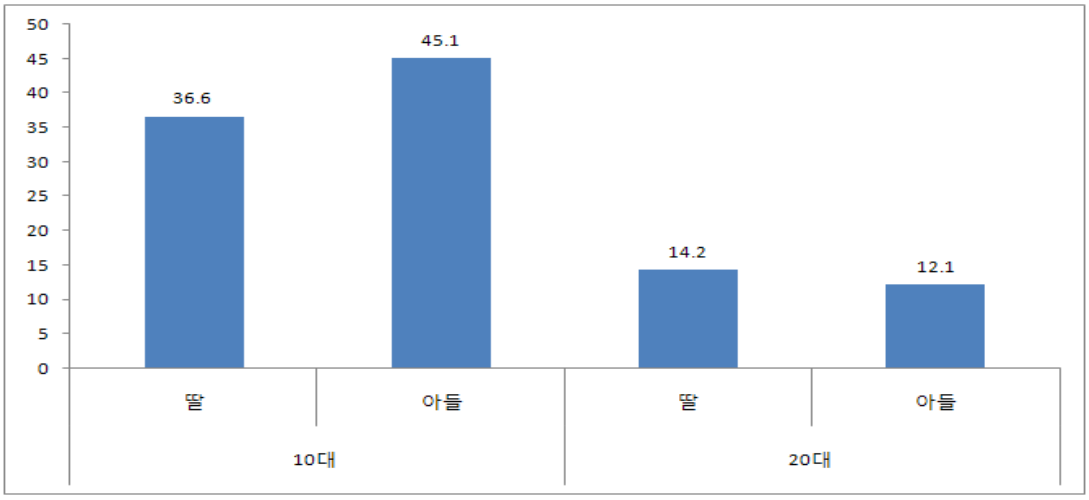


[그림 12] 자녀의 성 · 연령별 혼전임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 "남자(여자) 친구의 부모와 상의한 후 낙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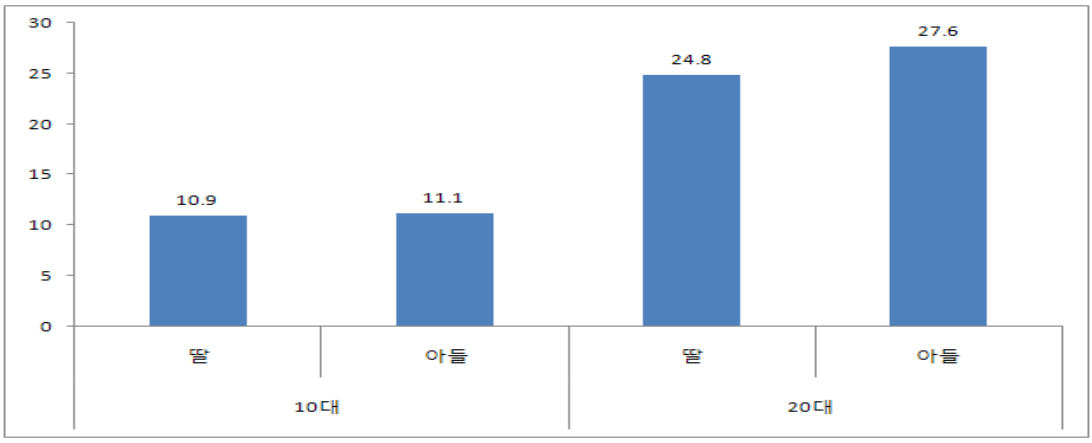


[그림13] 자녀의 성 · 연령별 혼전임신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 "전적으로 딸(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 (2) 미혼부의 책임 및 태도에 대한 견해

미혼부의 역할과 책임, 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구성하였다. 혼전성관계로 여성이 출산을 하였으나 결혼이 불가능할 경우 남성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전체의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자가(45.5%)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미혼부의 책임에 강하게 공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1/3 정도가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고 하여(34.4%),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수행하면 된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역할수행의 형식과 소극적인 역할수행 형

식을 모두 포함하면, 응답자의 10명중 8명이 미혼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소수 의견으로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여성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하게 한다”(9.9%),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여성에게는 아이와의 모든 인연을 포기하게 한다”(4.9%), “출산비용만을 제공한 후 전혀 모르는 일로 지낸다”(3.9%)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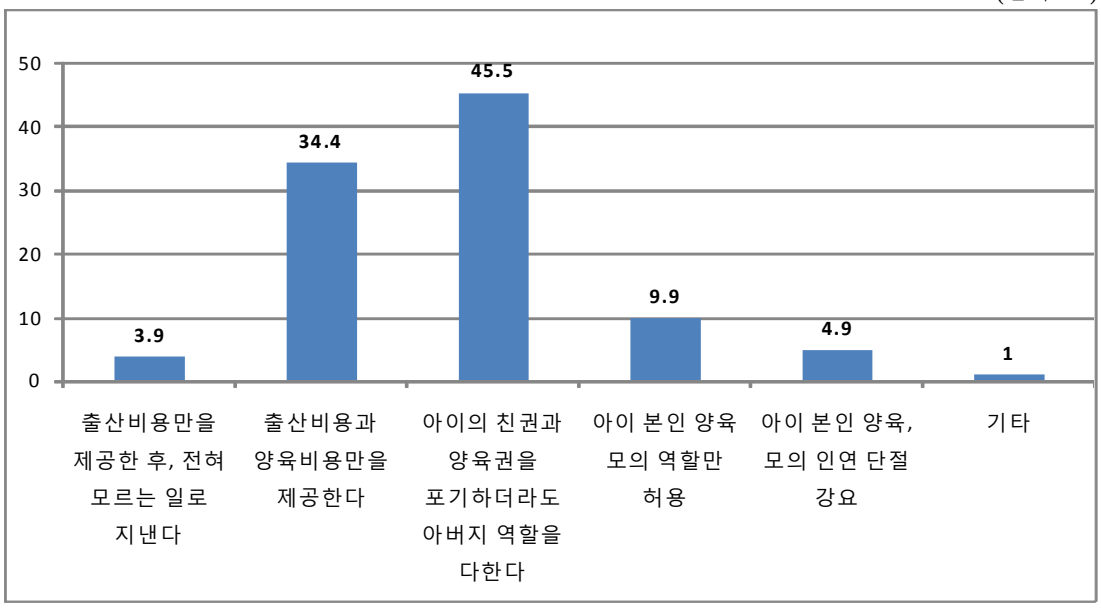


**[그림 14] 미혼모의 출산 후 미혼부의 태도에 대한 견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6.8%, 30대 50.0%, 40대 45.3%, 50대 42.0%, 60대 41.6%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책임의식, 역할에 대해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구의 월평균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200만원미만(43.1%), 200만원대 42.7%, 300만원대 46.1%, 400만원대 46.8%, 500만원 이상 49.8%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책임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 인구학적 특성별 미혼모의 출산 후 미혼부의 태도에 대한 견해

(단위: %)

| | | 출산비용만을 제공한 후, 전혀 모르는 일로 지낸다 |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 |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역할을 다한다 | 아이 본인 양육 모의 역할만 허용 | 아이 본인 양육, 모의 인연 단절 강요 | 기타 | 합계 |
|---|---|---|---|---|---|---|---|---|
| 전체 | | 76 (3.9) | 688 (34.4) | 910 (45.5) | 198 (9.9) | 98 (4.9) | 20 (1.0) | 1,990 (100.0) |
| 연령대 | 20대 | 14 (3.3) | 156 (37.2) | 196 (46.8) | 38 (9.1) | 9 (2.1) | 6 (1.4) | 419 (100.0) |
| | 30대 | 9 (1.8) | 154 (31.4) | 245 (50.0) | 52 (10.6) | 24 (4.9) | 6 (1.2) | 490 (100.0) |
| | 40대 | 18 (3.6) | 175 (35.4) | 224 (45.3) | 49 (9.9) | 27 (5.5) | 2 (0.4) | 495 (100.0) |
| | 50대 | 19 (5.4) | 127 (35.8) | 149 (42.0) | 34 (9.6) | 20 (5.6) | 6 (1.7) | 355 (100.0) |
| | 60대 | 15 (6.6) | 76 (33.2) | 96 (41.9) | 25 (10.9) | 17 (7.4) | 0 (0.0) | 229 (100.0) |
| 교육수준 | 국졸 이하 | 10 (13.3) | 25 (33.3) | 33 (44.0) | 6 (8.0) | 1 (1.3) | 0 (0.0) | 75 (100.0) |
| | 중졸 | 9 (5.5) | 52 (31.9) | 71 (43.6) | 20 (12.3) | 10 (6.1) | 1 (0.6) | 163 (100.0) |
| | 고졸 | 39 (4.1) | 339 (35.4) | 419 (43.7) | 104 (10.9) | 49 (5.1) | 8 (0.8) | 958 (100.0) |
| | 대졸 이상 | 18 (2.3) | 269 (34.1) | 386 (48.9) | 68 (8.6) | 38 (4.8) | 11 (1.4) | 790 (100.0) |
| 월가구총소득 | 200만원 미만 | 14 (6.7) | 78 (37.3) | 90 (43.1) | 22 (10.5) | 5 (2.4) | 0 (0.0) | 209 (100.0) |
| | 200만원대 | 18 (3.8) | 172 (36.8) | 200 (42.7) | 49 (10.5) | 26 (5.6) | 3 (0.6) | 468 (100.0) |
| | 300만원대 | 24 (3.7) | 232 (35.6) | 300 (46.1) | 54 (8.3) | 36 (5.5) | 5 (0.8) | 651 (100.0) |
| | 400만원대 | 15 (4.4) | 114 (33.3) | 160 (46.8) | 34 (9.9) | 15 (4.4) | 4 (1.2) | 342 (100.0) |
| | 500만원 이상 | 5 (1.6) | 91 (28.7) | 158 (49.8) | 39 (12.3) | 17 (5.4) | 7 (2.2) | 317 (100.0) |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47.2%),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33.5%),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여성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허용한다”(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44.2%),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35.5%),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여성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허용한다”(11.1%) 등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단, 아버지 책임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가(47.2%) 여성보다(44.2%)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미혼부의 아이에 대한 책임의식, 아버지 역할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미혼모의 출산 후 미혼부의 태도에 대한 견해: 성별 비교

(단위: %)

| | | 출산비용만을 제공한 후, 전혀 모르는 일로 지낸다 |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 |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역할을 다한다 | 아이 본인 양육 모의 역할만 허용 | 아이 본인 양육, 모의 인연 단절 강요 | 기타 | 합계 |
|---|---|---|---|---|---|---|---|---|
| 성별 | 남성 | 37<br>(3.7) | 337<br>(33.5) | 474<br>(47.2) | 89<br>(8.9) | 57<br>(5.7) | 11<br>(1.1) | 1,005<br>(100.0) |
| | 여성 | 40<br>(4.1) | 350<br>(35.5) | 435<br>(44.2) | 109<br>(11.1) | 42<br>(4.3) | 9<br>(0.9) | 985<br>(100.0) |

결혼 상태별로는 우선 미혼의 경우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49.3%),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34.4%),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여성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허용한다”(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44.6%),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34.6%),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여성에게는 어머니의 역할만을 허용한다”(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부가 아버지 역할을 적극적인 방법으로든 소극적인 방법으로든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미혼의 경우가(83.7%) 기혼보다(79.2%) 높게 나타났다.

〈표 15〉 미혼모의 출산후 미혼부의 태도에 대한 견해: 혼인상태별 비교

(단위:%)

| | | 출산비용만을 제공한 후, 전혀 모르는 일로 지낸다 | 출산비용과 양육비용만을 제공한다 |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역할을 다한다 | 아이 본인 양육 모의 역할만 허용 | 아이 본인 양육, 모의 인연 단절 강요 | 기타 | 합계 |
|---|---|---|---|---|---|---|---|---|
| 결혼유무 | 미혼 | 14<br>(2.9) | 165<br>(34.4) | 236<br>(49.3) | 40<br>(8.4) | 14<br>(2.9) | 10<br>(2.1) | 479<br>(100.0) |
| | 기혼 | 62<br>(4.1) | 523<br>(34.6) | 673<br>(44.6) | 158<br>(10.5) | 84<br>(5.6) | 10<br>(0.7) | 1,510<br>(100.0) |

### (3) 미혼모 · 부의 어려움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친지의 경우를 가정하여 미혼모/부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본인의 자녀의 경우를 가정하여 자녀가 미혼모나 미

혼부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아이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40.0%)을 꼽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웃이나 사회의 따가운 시선”(22.9%), “학업이나 직장생활의 제약”(17.7%), “향후 자녀의 결혼문제”(17.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아직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여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응답자의 열 명중 두명이 사회적 편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못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다시 말해서 미혼모/부 문제의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서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의 두 가지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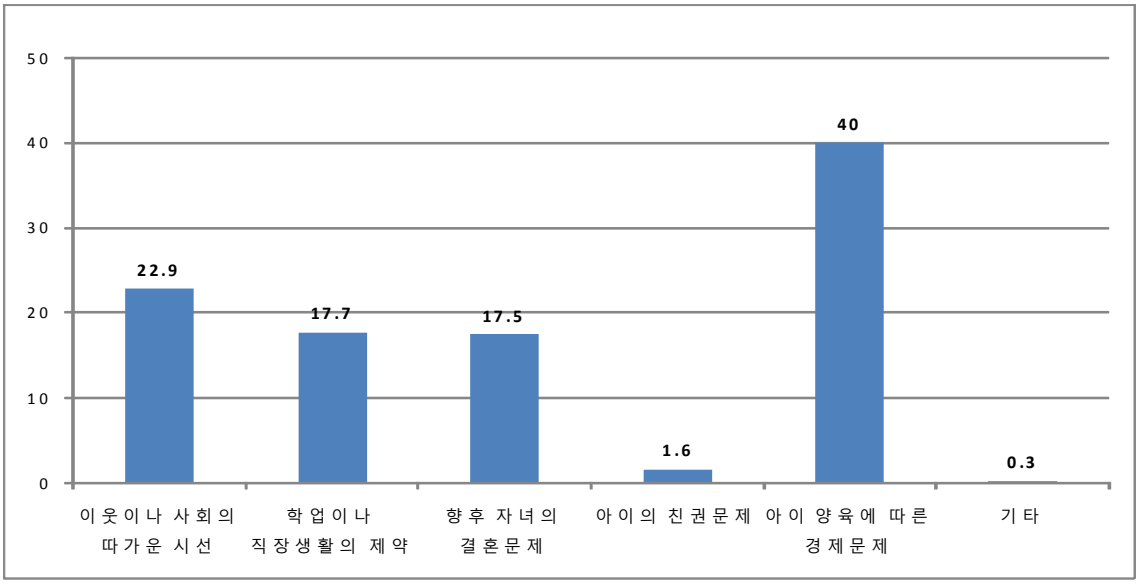


**[그림 15] 미혼모(부)의 어려움**

한편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과(40.9%) 여성(39.1%)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남녀 공히 경제적인 양육부담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3.0%), 50대(41.4%), 60대(40.6%)에 비해 20대(36.8%), 30대(38.7%) 젊은 연령층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래의 상황(본인의 자녀의 경우를 상정하였음)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현실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온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혼(41.1%)보다 미혼(36.7%)의 경우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표 16〉 미혼모/부의 어려운 점

(단위: %)

| | | 이웃이나 사회의 따가운 시선 | 학업이나 직장생활의 제약 | 향후 자녀의 결혼문제 | 아이의 친권 문제 |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문제 | 기타 | 전체 |
|---|---|---|---|---|---|---|---|---|
| 전체 | | 457 (22.9) | 353 (17.7) | 350 (17.5) | 33 (1.6) | 800 (40.0) | 5 (0.3) | 1,999 (100.0) |
| 성별 | 남성 | 239 (23.7) | 164 (16.3) | 176 (17.5) | 17 (1.7) | 412 (40.9) | 0 (0.0) | 1008 (100.0) |
| | 여성 | 218 (22.0) | 189 (19.1) | 174 (17.6) | 16 (1.6) | 387 (39.1) | 5 (0.5) | 989 (100.0) |
| 연령대 | 20대 | 109 (26.0) | 74 (17.7) | 73 (17.4) | 9 (2.1) | 154 (36.8) | 0 (0.0) | 419 (100.0) |
| | 30대 | 103 (21.0) | 106 (21.6) | 83 (16.9) | 8 (1.6) | 190 (38.7) | 1 (0.2) | 491 (100.0) |
| | 40대 | 109 (21.7) | 85 (16.9) | 82 (16.3) | 6 (1.2) | 216 (43.0) | 4 (0.8) | 502 (100.0) |
| | 50대 | 75 (21.1) | 58 (16.3) | 68 (19.2) | 8 (2.3) | 146 (41.1) | 0 (0.0) | 355 (100.0) |
| | 60대 | 60 (26.2) | 30 (13.1) | 44 (19.2) | 2 (0.9) | 93 (40.6) | 0 (0.0) | 229 (100.0) |
| 교육수준 | 국졸 이하 | 24 (32.0) | 10 (13.3) | 14 (18.7) | 0 (0.0) | 27 (36.0) | 0 (0.0) | 75 (100.0) |
| | 중졸 | 35 (21.6) | 26 (16.0) | 30 (18.5) | 2 (1.2) | 69 (42.6) | 0 (0.0) | 162 (100.0) |
| | 고졸 | 221 (23.0) | 159 (16.5) | 187 (19.5) | 17 (1.8) | 377 (39.2) | 0 (0.0) | 961 (100.0) |
| | 대졸 이상 | 178 (22.3) | 158 (19.8) | 117 (14.7) | 14 (1.8) | 326 (40.9) | 5 (0.6) | 798 (100.0) |
| 결혼유무 | 미혼 | 121 (25.2) | 100 (20.8) | 74 (15.4) | 9 (1.9) | 176 (36.7) | 0 (0.0) | 480 (100.0) |
| | 기혼 | 337 (22.2) | 254 (16.7) | 277 (18.2) | 23 (1.5) | 624 (41.1) | 5 (0.3) | 1520 (100.0) |
| 월가구총소득 | 200만원 미만 | 45 (21.4) | 44 (21.0) | 34 (16.2) | 2 (1.0) | 83 (39.5) | 2 (1.0) | 210 (100.0) |
| | 200만원대 | 121 (25.9) | 89 (19.0) | 71 (15.2) | 5 (1.1) | 182 (38.9) | 0 (0.0) | 468 (100.0) |
| | 30대 | 160 (24.5) | 102 (15.6) | 121 (18.5) | 8 (1.2) | 262 (40.1) | 0 (0.0) | 653 (100.0) |
| | 400만원대 | 60 (17.5) | 63 (18.4) | 53 (15.5) | 12 (3.5) | 154 (44.9) | 1 (0.3) | 343 (100.0) |
| | 500만원 이상 | 71 (22.3) | 55 (17.2) | 70 (21.9) | 5 (1.6) | 116 (36.4) | 2 (0.6) | 319 (100.0) |

## 4.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방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빈민, 실업자, 장애인, 노인, 미혼모/부, 이혼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들 중 누구를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인 보호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사회적 약자 중 정부가 지원해야 할 우선적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장애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8.5%), 다음으로 노인(26.8%), 실업자(19.5%), 빈민(7.5%), 미혼모/부(6.3%), 이혼한부모(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우선적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실업자, 빈민 등의 범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보호요구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생각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구의 경우 복지의 역사가 빈민의 구제에서부터 시작한 장구한 역사를 갖는데 비해, 우리사회의 일천한 복지역사에서는 빈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모/부에 대한 보호요구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었을 뿐더러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생각 역시 크게 강조되어 오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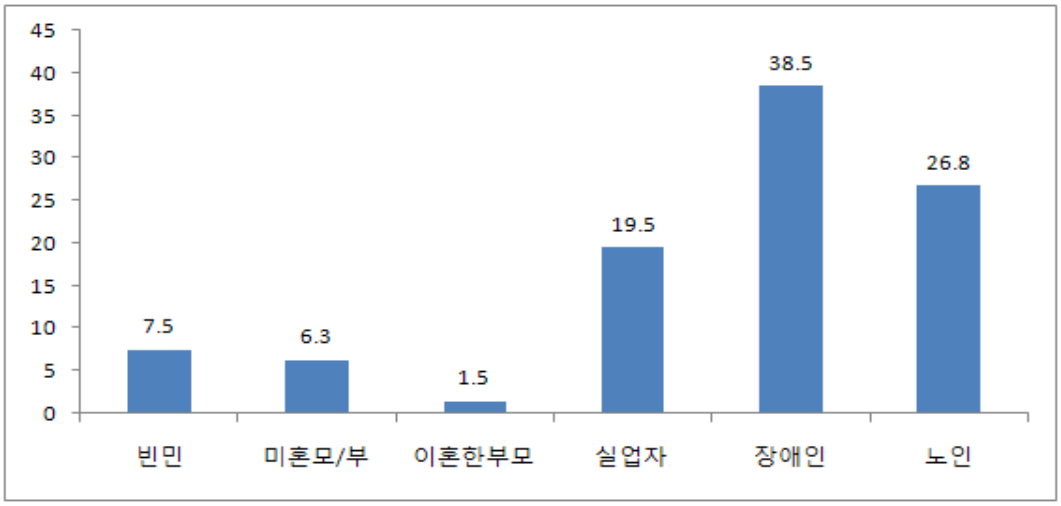


[그림 16] 사회적 약자 중 우선보호 대상자

미혼부모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3.24/4점 척도 기준). 사회적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보다는 미혼부모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었다. 예컨대 가장 동의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국가는 미혼부모 보호정책보다는 미혼부모 예방정책에 더 주력해야 한다”(3.40), “미혼부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유해사이트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3.35) 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혼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이나 우선 취업특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3.16), “국가는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3.1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미혼모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지 못한 현실과, 또한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가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3.30),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는 미혼모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벌여야 한다”(3.31) 등 학교교육 복귀, 인식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미혼부의 양육책임에 대한 문제 “미혼모나 자녀의 부양을 거부하는 남성에게 보다 강력한 양육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3.30)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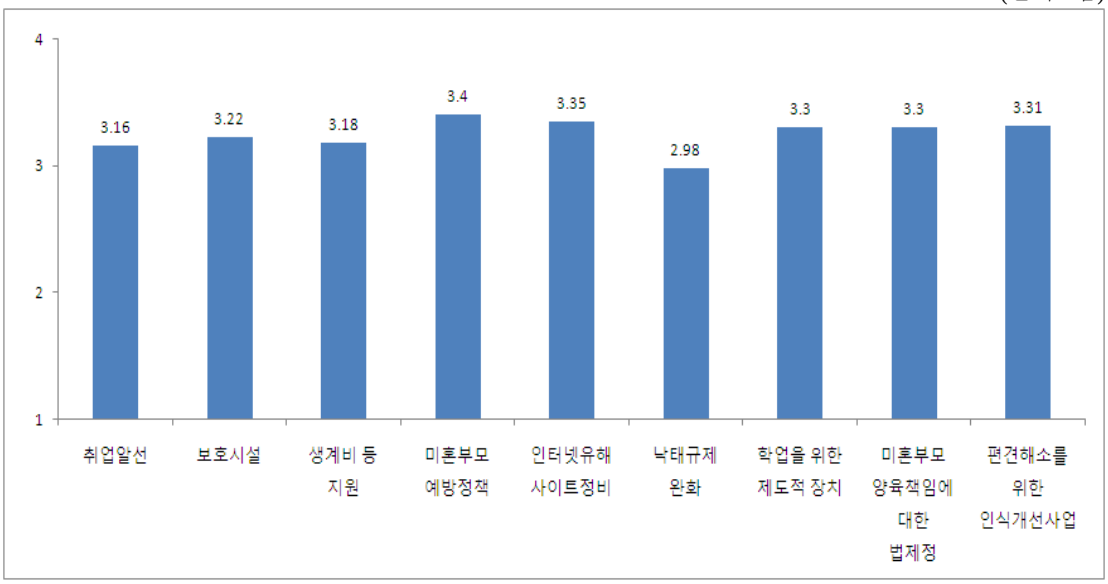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그림 17] 미혼부모의 사회적 보호방안에 대한 지지도**

이에 비해,“미혼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2.98)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낙태규제 완화에 대한 응답에서는 집단

별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의도가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의도가 높게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동의도가 높고,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계층에서 낙태규제 완화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7〉 낙태 규제 완화에 대한 집단별 비교**

(단위: 점)

| 구분 | | N | 평균 | 표준편차 | F(t) |
|---|---|---|---|---|---|
| 성별 | 남성 | 996 | 2.99 | 0.805 | 0.552 |
| | 여성 | 965 | 2.97 | 0.782 | |
| 연령 | 20대 | 403 | 2.94 | 0.777 | 4.428*** |
| | 30대 | 480 | 2.92 | 0.825 | |
| | 40대 | 498 | 2.96 | 0.772 | |
| | 50대 | 352 | 3.01 | 0.802 | |
| | 60대 | 229 | 3.17 | 0.762 | |
| 교육 수준 | 국졸 이하 | 74 | 3.13 | 0.645 | 8.630*** |
| | 중졸 | 160 | 3.12 | 0.809 | |
| | 고졸 | 946 | 3.03 | 0.779 | |
| | 대졸 이상 | 777 | 2.88 | 0.809 | |
| 혼인 상태 | 미혼 | 465 | 2.88 | 0.794 | −3.237*** |
| | 기혼 | 1496 | 3.02 | 0.791 | |
| 월평균 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 209 | 3.09 | 0.809 | 2.513* |
| | 200만원대 | 459 | 3.03 | 0.755 | |
| | 300만원대 | 642 | 2.97 | 0.809 | |
| | 400만원대 | 333 | 2.93 | 0.786 | |
| | 500만원 이상 | 315 | 2.92 | 0.807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 ***p<.001, **p<.01, *p<.05

끝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미혼모·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결과는 미혼모·부의 취업 및 일자리 지원(2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22.6%), 미혼모보호 시설확충(18.0%), 미혼모·부 가족의 주거지원(14.7%), 청소년 미혼모·부의 학업복귀 지원(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미혼모·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히고 있었다. 특히 이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미혼모·부 들이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 물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지원이다. 또한 주거지원과 학업복귀 지원 역시 우리사회가 미혼모·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들이다. 특히 서구사회의 경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이들의 주거지원과 학업복귀를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영역은 향후 미혼모·부 정책에서 매우 주력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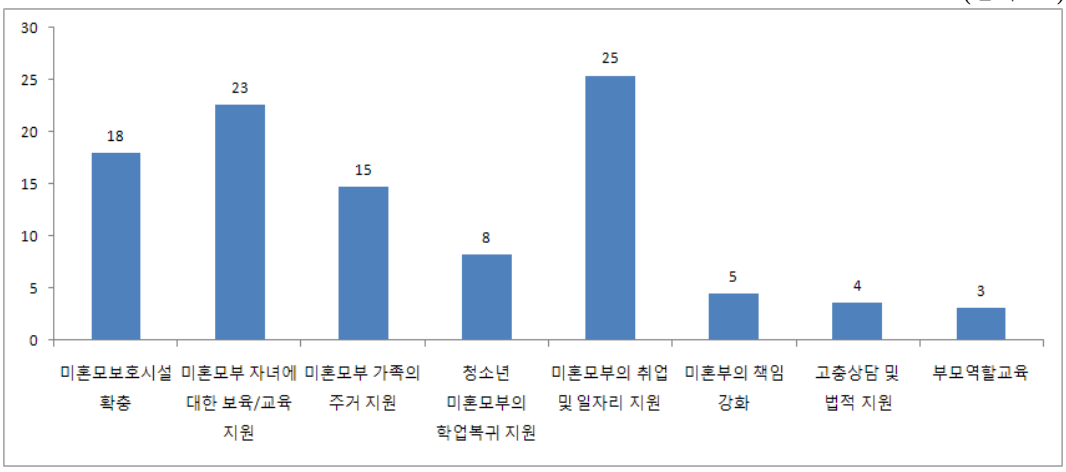


[그림 18] 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필요정책

## Ⅳ. 맺음말 : 배제에서 포용으로

그동안 미혼모의 실태를 밝힌 다양한 연구들은 미혼모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는 이들로 하여금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혼모·부의 지원정책은 무엇보다 이들이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모색함은 물론 이들과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는 일이 가장 근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태도와 편견 등에 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혼전성관계를 위시하여 미혼의 부·모를 바라보는 대중매체의 시선은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음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본 결과, 적어도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미혼모를 성적으로 방탕하거나 본질적으로 문제적인 개인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 않으나, 이들의 판단력과 책임성의 부족에 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혼의 부모들을 동네 주민이나 이웃, 혹은 직장동료로서 그 존재는 기꺼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들과 친밀한 교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은 강하게 발견되지 않지만, 미혼모와

이들 가족의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어느 정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혼모·부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개인과업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과업의 성실한 수행은 곧 미혼모·부들로 하여금 단순히 사회적 낙인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성공적인 삶을 운영하는 주체자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성원들은 이미 우리사회가 개인의 다양한 삶의 선택을 인정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와 다문화사회로의 이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 혹은 집단간 차이에 근거한 차별과 배제의 전략보다는 서로 다른 차이를 다양성으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의 지원대상으로 꼽고있지는 않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미혼모·부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성장 시기에 있는 10대 후반과 20대 중반까지의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한부모들보다 훨씬 자립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끝으로 미혼모·부의 문제는 성문화와 가족제도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미 비정형의 가족형태가 2005년도 기준하여 30%를 넘고 있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은 42%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로 한국의 고질적인 순혈주의도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백년해로의 개념으로서 결혼에 대해 갖는 낭만적 기대도 상당부분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인 가족제도 틀 내에서의 자녀출산만을 정당한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예컨대 낙태완화에 대한 동의정도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 자녀가 임신한 경우에는 낙태를 권하겠다는 선택비율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은 낙태완화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의 가치와는 충동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한편, 20대 성인자녀의 경우 역시 혼전성관계에 의한 임신이라면 그 성적파트너와의 결혼을 전제로 출산토록 하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는데, 이 역시 제도적인 가족관계 틀 내에서의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흔히 사랑하고 결혼하여 임신, 출산한 부부도 유자녀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출산과 자녀양육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매우 절실하다. 어떠한 상황과 선택에 놓여있던 다음세대는 귀중한 한국사회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출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법적인 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부정시하는 태도는 저출산 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여건적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수구적인 태도 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강영실, 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강은화, 2005,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2권 3호:39-59.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외, 2005, “적대정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하위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Vol. 19(3):117-133.

김혜영, 2008,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도미향,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권 2호: 1-11

문의승, 임애덕, 2006, “미혼모・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논문집 26집 “ 393-422.

박수미 외,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Vol. 8.no. 3:45-70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1996, 「한국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 1 회 여성복지세미나 자료.

윤미현, 2000,「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은기수, 권태환, “한국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5권 1호: 5-32

이삼식, 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모발생 에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노동자회, 국회의원 홍미영 의원실, 2006 「한부모 빈곤여성 자립정책 진단 및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한인영, 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

허남순, 2006,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Institute for Amercian Values, *The Age of Unwed Mothers,* 1999.

◈ 발 표 2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면서: 입양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된 미혼모

입양은 친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기관보호, 가정위탁양육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체적 보호 방식의 하나로 이들 대안적 양육방식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Lee 2007). 자녀가 입양되면 친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은 입양부모에게 제공된다. 한국에서 입양은 전통적으로 가문을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족이나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졌기에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비혈연관계 아동의 입양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 내부적으로는 입양에 대해서 폐쇄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경을 넘어선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한국은 세계 1위의 아동 송출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임시적 조치로 취해진 해외입양은 입양제도의 확장과 자국민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에 소홀히 한 결과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타인종의 가족에게 아동이 입양되는 역사는 길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었다. 입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알선으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상이한 사회로 아동이 입양되는 것의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세기를 넘는 국제입양의 역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자국 영토 밖으로 입양 보낸 국가이고 미국은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자국 영토 밖에서 받아들인 국가이다.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은 단일국가 출신의 아동들이 세계 최대 규모로 국경을 넘어서 타인종 사회로 이주한 사건이다(Choy 2007).

한국전으로 발생한 고아 및 혼혈인을 위해서 시작된 해외입양제도는 이후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88년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준비할 때 한국의 해외입양은 세계언론으로부터 '아기수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이삼돌 2008). 이후 정부는 해외입양을 감축하려고 하였고, 해외입양의 추세는 90년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07년에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미국에 입양을 보내는 국가이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국의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친가족과 친어머니를 찾는 모습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었다. 가족찾기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족과 관련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국민들은 이제는 해외입양이 중단되어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정부는 해외입양의 대안으로 국내입양 촉진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해외입양, 국내입양,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최대 규모로 해외로 입양 간 아동의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별 논의가 없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해외입양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어머니와 연결해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별로 없다. "친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입양이 고려되는데, 우리사회는 친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80년대 이후부터 해외입양아의 어머니 대부분은 "미혼모"이다. 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들은 감히 나서서 자녀양육의 권리를 말하지 못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너무 쉽게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를 방치하였다. 입양이라는 사건은 친어머니에게는 평생 지고 갈 고통과 죄책감을, 그리고 입양인에게는 평생 뿌리와 정체성 찾기라는 숙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과 관련된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입양의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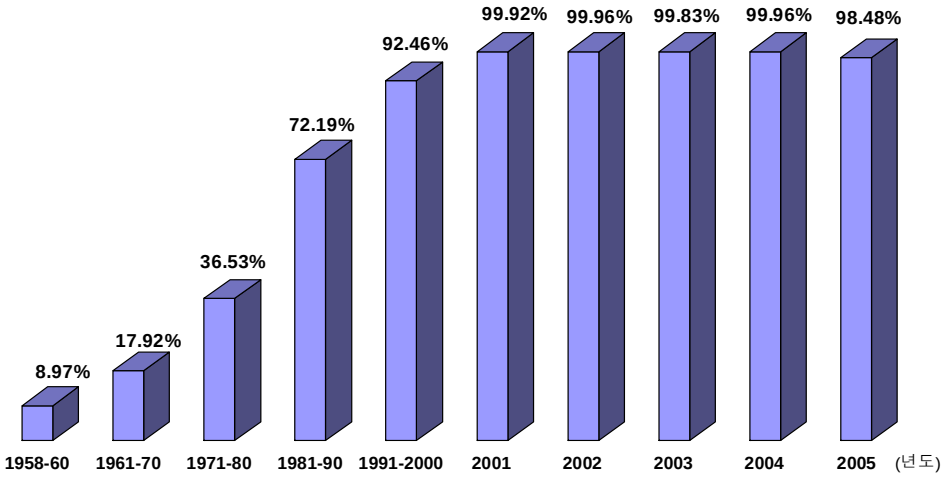


자료 : 재외동포재단, 2006 국외입양인 백서

**〈그림 1〉 해외입양아동 중 미혼모 자녀 비율**

## 2. 한국아동 해외입양의 역사와 규모

1955년 해리(Harry)와 버다(Bertha) 홀트(Holt)가 한국전으로 고아가 된 8명을 입양함으로써 세계의 입양 관행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D. Kim, 2007; Shiao and Tuan, 2007). 이들이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한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미디어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이들의 행동은 입양 문화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가져왔는데,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인종간 입양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홀트는 세계 최초의 최대 국제입양기관을 설립하고 그 결과 해외입양이 제도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D. Kim, 2007; Shiao and Tuan 2007).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해외입양은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1948년 미국정부는'난민법(Displaced Persons Act)'를 제정하는데, 이 법은 입양을 통해서 혹은 입양 없이 3천명의 전쟁고아를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쟁 직후 500명의 한국고아가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었다(D. Kim, 2007). 이후 한국전쟁으로 고아가 늘면서 '난민구제법(Refugee Relief Act)'을 제정하여 입양을 통하여 4,000명의 고아를 1956년까지 미국에 보내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후 고아 비자에 대한 상한선이 미하원에 의해서 폐지되면서 입양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이민이 1961년 '이민과 국적에 관한 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의해서 정상화되었는데, 이 조치는 외국 출신 아동 입양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D. Kim, 2007).

〈표 1〉 해외입양아 수

(단위:명)

| 연도 | 1953 | 1963 | 1973 | 1978 | 1983 | 1985 | 1988 | 1993 | 1995 | 1998 | 2003 | 2005 | 2007 |
|---|---|---|---|---|---|---|---|---|---|---|---|---|---|
| 입양아수 | 4 | 442 | 4,688 | 5,917 | 7,263 | 8,837 | 6,463 | 2,290 | 2,180 | 2,443 | 2,287 | 2,101 | 1,264 |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입양현황통계 재구성

또 입양부모들은 입양 지원단체를 구성하여 한국아동이 해외로 입양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입양 아동으로는 한국외에도 전쟁을 경험하고 있었던 베트남 아동도 있었지만, 199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후 40년동안 여타 나라 출신의 입양아동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의 아동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지난 50년간 세계에게 외국입양아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에 입양 간 아동 중 한국아동의 수가 가장 많다. 1970년

대 중반후터 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 한국아동 중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20-30%를 차지하였다(Kane 1993).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입양되는 모든 아시아 아동 중 한국출신이 3분의 2를 구성하였다(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2001).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 중 한인입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달한다(Hübinette 2004). 1990년 동유럽과 중국이 자국내 아동의 미국입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1997년 '입양가족(Adoptive Families)'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모든 여타나라 출신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처음에는 갈 곳이 없는 한국의 전쟁고아를 구조하기 위해서 임시적 조치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었다(D. S. Ki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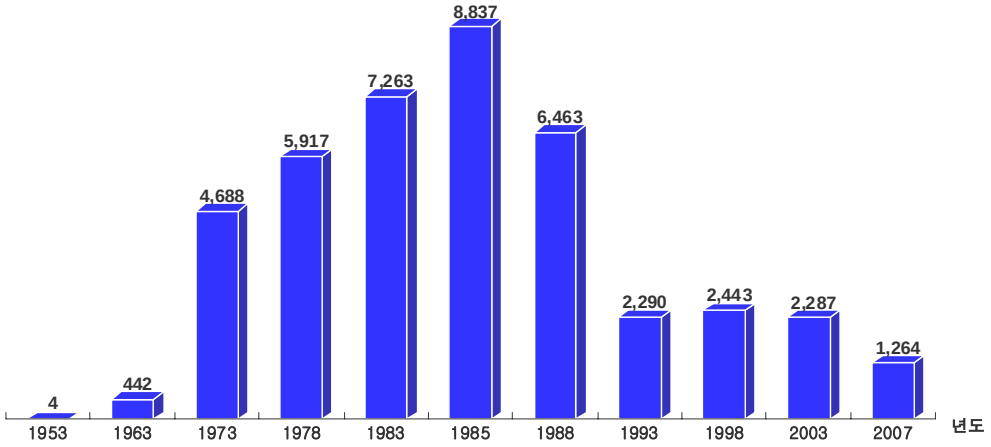


〈그림 2〉 해외입양아 수

## 3. 해외아동에 대한 미국내 수요

20세기 전반기만 하여도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인에 대해 배타적(exclusive)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어떻게 전후 대규모의 외국으로부터의 타인종 입양을 수용하였는가? 미국인들은 아시아 아동의 입양에 대해 호의적이었는데, 아시아 아동의 입양은 집 없고 버려진 아동을 구원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2000). 아시아 아동 입양은 미국내 흑인아동을 입양하는 것보다 훨씬 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Shiao and Tuan, 2007). 아시아로부터의 입양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긍정적 인종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사회에서 외국출신의 입양아동이 필요했던 이유는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감소하고 입양될 수 있는 건강한 백인 아이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D. Kim 2007). 1973년 낙태에 대한 미국대법원 판례(Roe vs Wade)에서 낙태가 합법화, 보다 효과적인 피임수단의 이용 확산, 그리고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늘면서 외국 입양아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Choy 2007; D. Kim 2007; Patton 2000).

## 4. 해외입양의 법제화

한국아동이 대규모로 해외에 입양된 배경에는 입양과 관련된 폐쇄적이고 혈연중심적인 관행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해외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고아를 입양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명시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입양은 가족법과 입양특례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국내입양은 가족법, 입양특례법은 해외입양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Lee 2007). 해외입양은 전쟁고아 해외입양을 추진하기 위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되었다 (Lee 2007). 국내에서의 입양은 전통적으로 집안의 가계와 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혈연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개인 가족의 일로 간주되어 입양에 대한 법적 감독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런 이유로 친척이 아닌 비혈연 아동의 입양이 드물었고. 혼혈인, 장애아동, 문제가 있는 아동은 해외로 보내졌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제도화되면서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해외 입양이 하나의 제도로서 발전하면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동안, 한국사회는 이들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복지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한국사회가 발전하면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한국아동의 구성이 변화하는데, 초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 아동으로 시작하여 빈곤가정의 아동,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는 미혼모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해외입양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 입양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외입양을 축소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해외입양의 비중은 작지 않다. 해외 입양아 수는 1978년부터 잠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81년부터 다

시 증가하여 1985년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80년대 중반 매년 7,700여명에서 8,800여명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급속히 감소한다(보건복지부통계 각년도).

## 5.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전쟁이후 고아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많은 수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는 해외입양이 필요했고, 국내 입양과 관련된 어려움은 해외입양의 의존을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해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외입양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비판적이었다. 해외입양은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돈들이지 않고 손쉽게 미혼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Byma, 1974).

처음에는 전쟁고아 입양이라는 임시조치로 시작한 입양이 법제정과 입양기관의 차원에서 제도화되면서 확장되면서 그 흐름을 돌이키기가 어려웠다.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 국내입양은 어려웠고 미혼모들은 아이 입양을 반대하고 자녀양육 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입양은 내부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약화시킨 채 내부의 아동복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사회의 빈곤만으로 입양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북한은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을 아동판매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는데(이삼돌 2008; D. Kim 2007), 북한도 한국전쟁 이후 고아를 소련과 동유럽국가 위탁양육이나 기관보호를 위해서 보냈는데, 이때 교사들이 아동을 동반하였고 나중에 이들은 집으로 돌아왔다(D. Kim 2007).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에 대한 비난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최고조에 달한다.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구의 언론들은 한국이 “아기 장사(baby selling)”를 하다고 맹비난하였다(이삼돌 2008; Rothschild 1988). 이러한 비난은 한국사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정부는 매년 해외입양아 수의 쿼터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입양을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입양아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해외입양은 작지 않은 규모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한국역사에 있어서 부끄러웠던 부분에 대한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H. Kim 2007).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국내입양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많은 관련 기사, 텔레비전 기록물, 드라마, 영화에서 해외입양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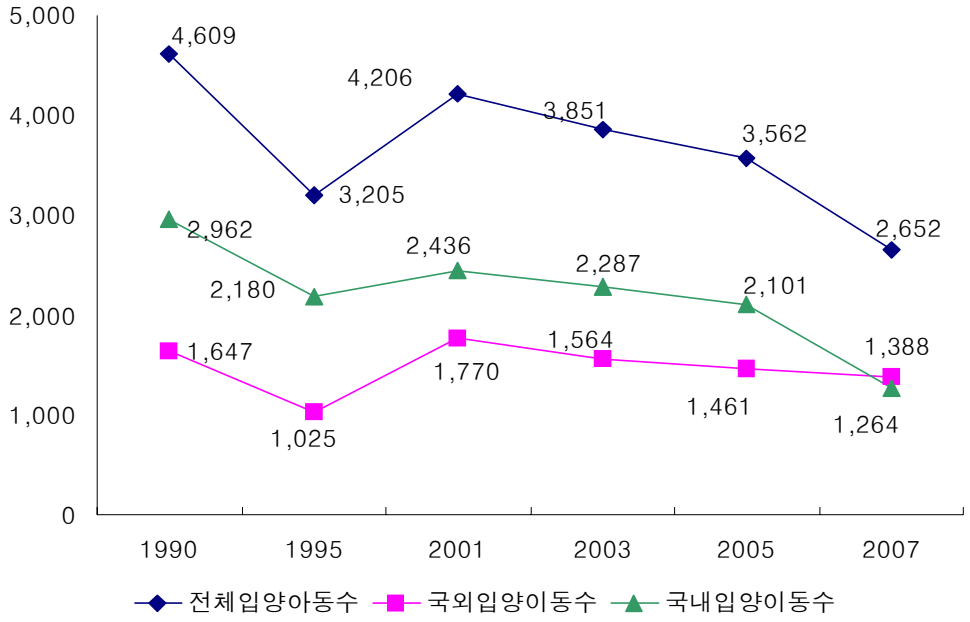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8),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수에서 재구성

〈그림 3〉 입양아동수 :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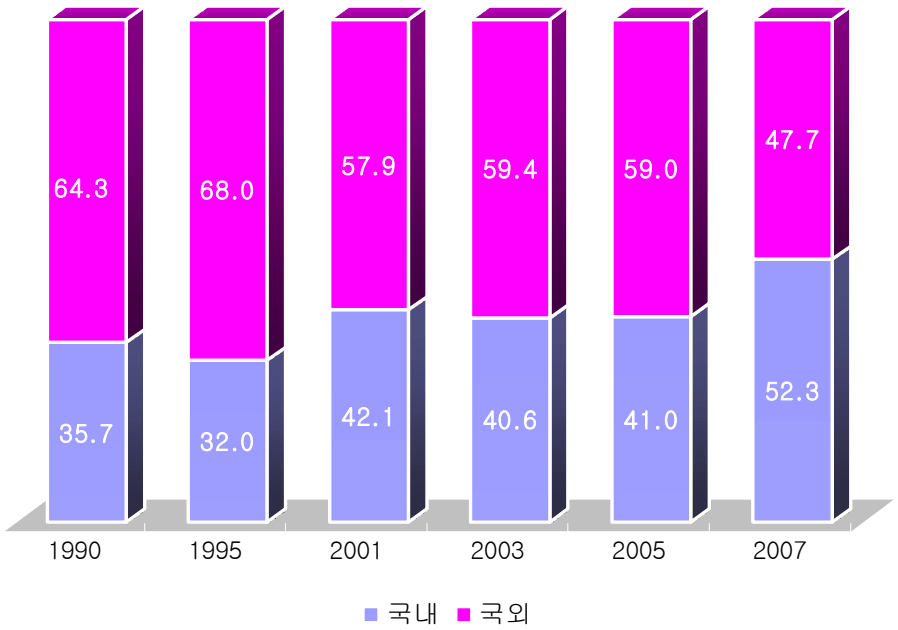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2008), 아동입양기관 및 입양아동수에서 재구성

〈그림 4〉 국내·외 입양아동 비율

## 6. 해외입양에 대한 대응 : 국내입양 촉진 및 입양인 방문 지원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에 대한 국제적 비판은 정부로 하여금 국내입양 촉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입양은 가계를 잇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1995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의 복지 증진이나 입양에 대한 입양의 사전,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입양 예정 가정을 사전에 조사하거나 입양 후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1995년 1월'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하였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995). 1995년 법의 특징은 입양이 전통적으로 대를 잇는 수단으로 인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입양을 규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기관의 장이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후 적응상태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미아 아동의 국외입양을 위한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고,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또 정부는 1995년 10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전문을 개정한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1995). 해외 입양 아동의 모국방문과 모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모국방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 방문하는 입양인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체계 확립을 명문화한다. 문화교육, 언어훈련, 채용우대, 친가족상봉 관련 프로그램이 법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 7. 해외입양인들의 한국방문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국제적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입양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입양인의 한국방문은 증가하여, 3,000-5,000명의 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E. Kim 2007; H. Kim 2007). 이 같은 입양인들의 한국방문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영화, 비디오, 예술작품, 회고록, 텔레비전을 통한 사람찾기 프로그램 같이 다양한 문화적 양식을 통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H. Kim, 2007). 한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은 친가족을 찾으려고 하였는데, 입양기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의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입양인 한국방문 및 한국체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양인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인의 모국방문을 주선하도록 하였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전문, 1995). 정부, 문화단체, 입양기관은 이들을 위해 언어, 문화, 모국여행, 그리고 친가족을 찾는 것을 지원하였다(E. Kim 2007). 1990년대 후반, 입양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급증하였는데, 비영리 종교 및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친가족 상봉을 지원하였다. 대학의 어학프로그램에서는 이들에게 장학금 제공을 제공하였다(E. Kim 2007). 9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한국입양에 대한 논의는 한국입양인이 친어머니와 친가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Hübinette 2004).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29명의 해외 한국입양인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자국아동의 해외입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E. Kim 1997). 1999년 입양인들은 해외동포라는 법적 지위를 얻는데, 그 결과 이들에게는 2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허용되고, 일하는 것, 투자, 부동산 취득, 의료보험 취득, 연금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E. Kim 1997).

## 8. 해외입양인의 적응

타인종 타문화로 입양된 아동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정체성의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지, 주류사회에서 자신의 외양으로 인해 주변화되는지, 또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서는 낯선 존재로 취급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Feigelman 2007).

출생국과 사회문화적으로 상이한 환경으로 이주된 입양아동들의 적응은 어떠하였을까? 미국내에서 실시된 이들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이들이 국내 입양된 아동에 비해서 적응에 더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이에 대해서 인종간 입양아들은 인종내 입양아와 마찬가지로 잘 적응한다고 하는데, 이들 연구가 인종적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은 아동기 입양아 대상 연구라고 지적하고 청소년기 후기나 초기 성년기에는 자신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한 시기이고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년에 걸친 추적 조사에서 인종간 입양된 흑인, 한국인이 인종내 입양된 집단과 비교해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Simon, Altstein, Melli, 1994; ,Vroegh 1992

Feigelman에서 재인용). 조사대상자들은 형제, 부모와 잘 지내며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힌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자료의 선별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이먼(Simaon) 등의 연구에 대해서는 처음 1971년 조사에서 접촉한 157명의 인종간 입양된 아동 중 55명만 91년까지 추적되었고 응답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imon, Altstein, Melli, 1994). 적응을 잘 하는 입양인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더 쉽게 적응한다는 연구가 있다(Feigelman and Silverman, 1983; Huh,2007).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문화적 전통을 강조해야 하는지 많은 부모들은 자녀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피부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color blined) (Huh 2007).

어떤 연구는 대부분 입양인 민족적(ethnic) 정체성이 별로 없고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찾는데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적 배경이 중요성이 지적되는데, 아시아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종적 배경에 대해서 당황하며(Huh 2007), 이들의 정체성은 입양보다는 인종에 의해서 도전받는다고 한다.

입양아들은 자신의 출신 문화와 생활하고 있는 현실 문화의 차이를 경험한다. 아이와 부모의 차이가 주요 가정생활에서 주요 이슈일 때 그것은 끊임없이 입양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적응을 방해한다. 겉모습과 기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거절되었다고 느낀다. 거부의 느낌은 긍정적 자아형성을 막는다(Benson et al, 1994).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되어 국제입양기관에서는 입양아의 출신배경과 관련된 정체성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Huh 2007).

## 9. 입양인의 이야기

인종간 입양에 있어서 입양아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이들이 인종내 입양인에 비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가족구성원과의 인종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 대한 글들이 많다.

한국 입양인들 중에는 친가족이나 출신국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입양되어 온 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한다(E. Kim, 2007). 많은 입양인들은 한국을 여행을 방문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고 싶다고 두려움이 깃든 마음으로 말한다고 한다(E. Kim, 2007).

입양인들은 미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어린시절, 백인문화에서 산다는 부정적 경험, 아시아인의 모습으로 백인 가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이들을 한국에 연결해주는 것은 이들이 경험했던 어려운 과거이다(E. Kim, 1997). 많은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한국인 입양인으로서 과거의 기억을 파헤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들에게 "한국적 정체성"의 형성은 입양과 관련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집단적으로 풀어 놓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입양인들의 다양한 네러티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양인들은 "왜 나의 부모는 나를 키울 수 없었는가?""왜 나는 외국에 보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어릴 때분터 한다(H. Kim 2007).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자신의 존재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하는 첫 단계는 어린시절의 침묵을 깨는 것이다(Hurdis, 2007). 입양인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차이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그러한 표현이 키워주신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Hurdis 2007).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위협이고 이들의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이해된다(Hurdis 2007).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느끼는 혼란을 해결하는 가운데 어린시절 경험했던 복합적 메시지를 풀어내려는 것이다(Hurdis 2007). 한 입양인은 "나의 정체성, 인종,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가슴앓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털어 놓는다(Hudis, 2007)

한 입양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혼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내가 양육된 대로 백인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외모상으로 보이는 아시안으로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Bruining 1997)."

선진국으로 입양되어 갔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을, 자신들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해 한다(E. Kim 2007). 이러한 시선에는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가족, 소속감, 역사를 잃은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해외입양인의 한국방문을 보면서'피는 물보다 진하다'한국인의 정체성은 부인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바라본다(H. Kim, 2007). 한국인들은 입양인들이 한국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왔다고 환영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적 정체성의 의미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다.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입양인들이 찾는 한국적 정체성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의 정체성 탐구의 시작은 한국인, 아시아인의 외모로서 백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신이 이 가정으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키워지지 못하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진 것, 그리고 한국인, 아시아인의 외모로 백인 가정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들이 모두 한국적 정체성과 관련 것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인식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자국의 아동을 돌보지 못해 아직도 아동을 입양보내는 나라, 미혼모와 미혼모의 자녀를 외면하여 이들을 이별하게 하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 입양인으로 경험했던 아픔이 한국과 관련된 이들의 기억이 아닐까?

입양인들 자신의 과거를 알려고 애쓴다. 상처에서 벗어나 침묵, 목소리, 역사를 드러내는 정의의 영역으로 나오려고 애쓴다. 오늘날 입양인의 목소리는 좌절과 고통에 대한 것이지만 또한 정의와 화해에 대한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Hudis 2007).

## 10. 미혼모, 입양인 어머니의 부재

80년대말부터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해외입양과 관련된 성찰이 시작된다.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가 소개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집단적으로 토해내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주요한 축을 구성하는 당사자인 입양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들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별로 없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여 이들은 숨겨져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염려하는 친부모 연합(Concerned United Birthparents, UCB)'와 같은 조직이 입양인을 위하여 결성되어 친부모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또 입양인들이 출생기록에 접근하고 친가족과 재회할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Wegar 1997). 1972년 미국의 전국흑인사회복지사연합(NABSW)에서는 인종간 입양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백인부모들은 흑인아동이 인종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도와주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종간 입양과 입양인들의 출생기록 접근 권리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진행되었다(H. Kim 2007).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이들의 친어머니들은 아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평생을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해외입양, 그리고 해외입양의 대안을 논의할 때 미혼모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미혼모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변화는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증가가 확인되는 것인데, 양육하려는 미혼모의 비율은 1984년 5.8%에서 2005년 31.7%로 증가한다. 정책적 관심과 개입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보내지 않고 스스로 키우려는 미혼모를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망설이는 미혼모에게 아동양육 지원이 보장된다면 양육 미혼모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입양보내는 미혼모는 감소할 것이다.

한국은 미혼모의 자녀양육 포기를 소홀히 하고 외면할 만큼 여유 있는 사회가 아니다.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세계 최저 1-2위를 다투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출생아가 어머니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차별받도록 내버려둘 만큼 여유가 없다.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양육 지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입양의 대안으로 미혼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해외입양은 종식될 것이다. 해외입양에 대한 논의에서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서 미혼모 양육을 복지체계 내에서 지원하면서 미혼모 자녀의 입양을 중단시켰던 선진국들의 길을 한국도 가야한다.

## 참고문헌


이삼돌. 2008.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한국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뿌리의 집 옮김. 소나무.

Bruining, Mi Ok. 1997. "A few words from another left-handed adopted Korean lesbian" edited by T. Bishoff & J. Rankin. *Seeds from a silent tree: 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Glendale, CA: Pandal Press.

Byma, S. 1974. "Overseas Adoption Threaten Development of Local Services" *Canadian Welfare* 50: 7-11.

Choy, Catherine Ceniza. 2005. "Institutionalizing International Adoption: the Historical Origins of Korean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2001. Annual Report. New York: Evan B. Donaldson Adoption Institute.

Feigelman, William. 2007. "A Long-Term Follow-Up of Transracially Atopted Children in Their Young Adult Year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Huh, Nam Soon.2007. "Korean Adopted Children's Ethnic Identity Formation."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Hübinette, T. 2004. "Adopted Korean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the 'Third Space'" Adoption & Fostering 28(1): 16-24.

Hurdis, Rebecca. 2007. Lifting the Shourd of Silenc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Truth, Legitimacy, and Justice.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Kane, S. 1993. The Movement of children of international adoption: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31(4): 323-339.

Kim, Dong Soo. 2007. "A Country Divided: Contextualizing Adoption from a Korean Perspective"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Kim, Eleana. 2007. "Remembering Loss: the Koreanness of Overseas Adopted Korean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Kim, Hosu. 2007. "Mothers without Mothering birth Mothers from Sou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Kim, S. 1997. "Class Struggle or family struggle? The lives of women factory workers in South Kore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Bong Joo. 2007. "Recent Trends in Child Welfare and Adoption in Korea: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Patton, S. 2000. Birthmarks: Transracial Adoption in Contemporary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Rebecca Smith. 1997. "Unconventional Seoul" in *Seeds from a silent tree: 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edited by T. Bishoff & J. Rankin. Glendale, CA: Pandal Press.

Rothschild, M. 1998. "Baby for Sale. South Korean Make Them, American Buy Them" *Progressive* 52(1): 18-23.

Shiao, Jiannbin L. and Mia H. Tuan. 2007. "A Socioligical Approach to Race, Identity, and Asian Adoption."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Simon, R. J., H. Altstein, and M. S. Melli. 1994. The Case of Transracial Adoption.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Press.

Vonk, M. Elizabeth, Sung Hyun Yun, Wansoo Park, Richard R. Massatti. 2007. "Transracial Adoptive Parents' Thoughts about the importance of race and culture in parenting"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발 표 3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외국의 미혼모 양육 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함의

유 연 규 서울 신학대학교 교수

## 1. 서론

‘양육’은 ‘부모’가 된 모든 이들에게 생애 과정에서 이전에는 겪지 못한 육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험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능력은 부모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양육 부담은 사회구조적, 제도적 요인에 따라 완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

미혼모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한다(NASW, 1965; 한인영, 1998에서 재인용). 즉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며(보건복지부, 1999:30; 김혜영, 2008에서 재인용), 법률상으로는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혜영, 2008). 합법적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혼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부모는 부모가 되기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출산·양육 부담에 맞닥뜨려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미혼부모의 이러한 출산·양육의 부담은 ‘미혼부’보다는 ‘미혼모’가 떠안게 되며 충분한 준비와 경험을 갖춘 부모에게도 어려운 양육 부담이 미혼모에게는 다른 부모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혼모가 경험하게 되는 출산·양육의 부담은 출산·양육 자체의 어려움도 크지만, 미혼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또다른 정신적 고통도 수반하기에 미혼모가 스스로 출산·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혼모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도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혼모는 낙태를 선택하거나, 낙태를 선택하지 않으면 출산하여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하기보다는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미혼모와 관련한 주요한 변화 중 하나가 양육 미혼모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미혼모 본인이 부양하겠다’는 비율이 1차 조사에서는 31.7%, 2차 조사에서 15.3%로 나타나 1984년 조사 당시 5.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허남순 외, 2005; 여성개발원, 1984; 이미정, 2008에서 재인용). 또한 미혼모자를 지원하는 시설인 애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에는 해당 시설에 있는 미혼모 중 양육 의사가 있는 미혼모 비율이 15%였으나 2007년에는 65% 이상으로 나타나(이미정, 2008), 양육미혼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05년 3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완화됨에 따라(강은화, 2006) 양육 미혼모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를 결정하는 경우 미혼모는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제공되지만, 경제적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고, 주거·시설 지원의 경우 미혼모자시설 중심의 시설 지원으로 실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의 현실이다.

미혼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대책은 국내외 입양 또는 시설보호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미혼모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친구, 상담원, 가족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입양을 권유받는 경향 역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출산 당시 필요한 입양 이외의 다른 대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친부모로서의 권리, 그리고 입양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며 친권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등 미혼부모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포기함에 따라 미혼부모와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박인선, 1998:55)을 고려할 때 미혼모의 양육 지원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 가족이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고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들의 미혼모 양육지원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한국의 미혼모 양육지원 정책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족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각국의 소득·고용·주거·보육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2. 선진국의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 현황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가족 구조가 다양화되고 가구 형태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구 비율의 증가도 있지만, 점차 미혼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Jones, 2007; Gonzalez, 2005). 그러나 서구 국가들에서는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고,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미혼모 가족이 제도적 지원의 특별한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미혼모 가족(또는 한부모 가족)이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소득·주거·고용·보육 등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정책 형태를 띠는 스웨덴과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발달한 프랑스, 10대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 영국, 세제혜택 중심의 경제적 지원과 보편적 의료·주거 서비스의 이원적 특성을 지닌 호주,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 형태를 띠고 있는 일본의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스웨덴[1)]

스웨덴은 미혼모 양육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로서 복지제도 전반적으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 충분한 서비스·급여 제도를 갖추었다는 특성을 띠고 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혼외출산에 대한 낙인이 없고, 미혼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여 미혼모의 구분이 사회 통념상 무의미하다(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따라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아동이 있는 가족'(families with children)에 대한 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해 미혼모 가족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임신수당, 부모보험, 아동수당, 장애아양육수당, 양육비, 양육수당 등의 급여가 제공되고,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창업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시 실업보험기금에서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18~29세 부모에게는 주거수당을 지급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 1) 임신수당(Pregnancy cash benefit)

근로환경법(Work Environment Act)에 의하면 임산부는 직장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고용주가 직무 전환을 해 주지 않으면 임산부는 직장을 휴직하고 임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50일까지 휴직 가능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급여의 25~75%를 받을 수 있다.

#### 2)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부모보험이 적용되어 총 480일간 육아휴직급여(Parental benefit)가 지급된다. 임시육아휴직급여(Temporary parental benefit)는 1년에 120일간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고, 질환 정도가 심각한 자녀들의 경우 자녀 연령 18세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1) 스웨덴 사회보장청 사이트(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를 참조하여 서술하였음.

① 육아휴직급여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 1인당 480일간의 유급 휴가가 제공된다. 3가지 급여 지급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소득비례 방식이고 다른 2가지는 정액급여 방식이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8세(또는 초등학교 1학년)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모성 클리닉(Maternity Clinic)에서는 임신기간동안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부・모 모두 수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둘 다 사용하는 경우 각각 240일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부・모 각각 60일을 꼭 사용해야 한다(daddy quota). 한부모가족일 경우 48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90일간 더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소득비례 또는 정액 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180일씩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수급권자가 자녀가 있는 부모, 자녀가 있는 부모의 동거인, 배우자가 되며, 급여는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된다. 먼저, 소득비례급여로 상병급여(sickness benefit)가 지급되며(상한액 연SEK410,000(일 SEK872)(약 70,421천원(일15만원))[2] 두 번째로 일당 SEK180(약 31,000원)의 기본급여액이 지급된다. 상병급여와 기본급여액은 390일간 지급되며, 처음 180일간은 반드시 상병급여 또는 기본급여 수준으로 지급된다. 세 번째 방식은 90일간 최저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2006년 1월 이후 출생아는 일당 SEK180이 지급되고 2006년 1월 이전 출생아는 일당 SEK60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성클리닉(Maternity Clinic)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이를 사회보험청에 송부하여 신청한다. 이 인증서는 부모 중 1명의 인적 사항만 기록할 수 있고 배우자분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청에 따로 공지할 수 있다. 즉 미혼모나 독신모가 이 급여를 신청할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모든 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액을 달리(100%/75%/50%/25%/12.5%) 받을 수 있다.

② 임시육아휴직급여(Temporary parental benefit)

자녀가 어릴 때에는 아플 때가 많은데 이때 유급 임시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시육아휴직급여는 아픈 자녀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 부모 또는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대상 자녀 연령은 12세 이하이고, 만 240일 미만 자녀인 경우 특별 급여가 주어진다. 주로 자녀가 아프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이용가능하며, 주양육자(배우자, 보모, 친척 등)가 아프거나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자녀의 질병, 재활치료, 관련 교육 때문에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자녀 1인당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양육자의 질환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액을 달리(100%/75%/50%/25%/12.5%) 받을

2) 보통 상병급여 상한액은 기본급여의 7.5배(SEK307,500)이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기본급여의 10배까지 확대된다.

수 있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와 함께 사는 동거인, 법적 보호자가 받을 수 있고, 부모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리양육자가 사용할 수 있다. 임시육아휴직급여는 상병급여의 80%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8일 이상 아플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3) 아동수당(Child allowances)

16세 미만 자녀를 둔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자녀가 16세가 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경우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s)이 지급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아동수당(large family supplement)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누가 받을 것인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동성(同性) 부모일 경우 연장자에게 지급된다). 경우에 따라 법적 보호자, 동거 부모, 위탁부모에게 지급될 수 있다. 아동수당액은 자녀 1인당 월 SEK1,050(약 18만원)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SEK2,100에 추가아동수당 SEK100이 지급되고 3명일 경우 추가아동수당 SEK454, 4명일 경우 SEK1,314가 지급된다.

### 4) 장애아동수당(Childcare allowances)

6개월 이상 돌봐야 하는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연령 19세가 될 때까지 장애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급여액을 100% 받을 경우 기본액(연 SEK41,000)의 250%(SEK102,500; 약 17,600천원)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전체 급여액의 75%, 50%, 25%를 받을 수도 있다. 장애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이 평균보다 많이 드는 경우 연 SEK7,980~SEK28,290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 5) 양육비 지급 이행(Maintenance support)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는 자녀 1인당 최대 월 SEK1,273(약 22만원)까지 함께 사는 독신모(부)에게 지급한다. 자녀 소득이 월 SEK48,000 이상일 경우 양육비는 SEK48,000 초과 소득의 50% 감소한다.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었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학생을 위한 연장 양육비 지급(Extended maintenance support for students)이 가능하다. 정부는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급된 아동양육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6) 양육수당(Child-raising allowance)

2008년 1월부터 0세~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돌볼 경우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영유아의 주양육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양육수당 지급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 7) 보육서비스

스웨덴의 보육서비스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잘 발달되어 있다. 스웨덴의 공보육은 취학전 활동과 취학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되고, 취학전 활동은 다시 유아학교, 가정보육, 개방형 유아학교로 구분된다. 방과후 학교는 레저타임센터, 개방형 레저타임센터, 가정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김수정, 2008:47). 보육서비스 이용료는 가구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고 이용료 상한제를 두어 보육서비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 8) 교육 및 훈련 지원

미혼모 혹은 독신모가 학생인 경우 학비지원(수업료 면제 및 학비보조)과 보육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일반학생들처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또한 미혼모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에 참여하면 활동비용을 지급한다. 활동비용은 실업보험의 실업급여와 같다.

#### 9)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

자녀가 있는 18세~29세 미만의 부모에게는 주거수당이 지급된다. 주거수당 급여액은 가구원수, 소득, 주거 비용,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 수당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수는 양부모가족 수의 3배 가까이 된다. 그만큼 미혼모 또는 독신모에게 주거 수당은 중요한 주거 보장 수단이다(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2005). 2004년에는 한 자녀를 둔 가족의 주거 수당은 최대 월 SEK2,500(약 43만원), 3자녀 이상 둔 가족의 주거 수당은 SEK3,900(약 67만원)까지 지급되었다.

### 나. 프랑스[3)]

프랑스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포용한다. 따라서 미혼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조건만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한부모 가

3) 프랑스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Center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Liasons for Social Security (www.cleiss.fr) 사이트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족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곤란을 고려하여 한부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7월 '적법한 출생'과 미혼부부 사이의 '자연적' 혹은 '비법률적' 출생을 구별하는 법적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해당 관청에 부모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게 되고 부모로서의 권한도 확대되었다. 이는 혼인 관계 없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허남순 외, 2005). 프랑스는 가족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발달해 있고,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수당과 보육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이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미혼부모의 자녀이든 입양 자녀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고, 급여 종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가족급여(2008년 1월 기준 €377.86;약 717천원)의 일정 비율이 지급된다.

### 1) 가족수당

①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프랑스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자녀 1인당 월 €120.92(약 230천원)가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154.92(약 290천원)가 지급된다.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20세 미만이다.

② 다자녀수당(Allocation forfaitaire)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첫째 자녀(또는 그 이상)가 20세가 되어 급여가 감소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즉 20세 이상이 된 자녀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1년간 지급하는 급여이다. 급여액은 기본가족급여의 20.234%인 €76.46(약 145천원)이다.

③ 소득보충급여(Complément familial)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3명 이상의 자녀가 3세~21세인 경우 지급한다. 급여액은 기본가족급여의 41.65%인 €157.38(약 299천원)이다.

④ 요보호아동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슬하의 아동들 또는 한부모에게 법적 혼인 여부 고려하지 않고 소득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급여로서, 부모가 없는 아동에게는 기본가족급여의 30%인 €113.36(약 215천원),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는 기본가족급여의 22.5%인 €85.02(약 161천원)가 지급된다. 위의 급여와는 달리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이다.

⑤ 한부모가족급여(Allocation de parent isolé)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된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본가족급여의 150%(자녀 1인당 기본가족급여의 50% 추가)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상해 준다.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임산부에게 €566.79(약 1,706천원), 자녀 1명인 한부모가구에는 €755.72(약 1,435천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자녀 1명당 €188.93(약 359천원)가 추가 지급된다.

### 2) 자녀양육수당

자녀양육수당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2004년 1월 이후 다양한 급여가 영유아보육수당(PAJE-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으로 통합되었다. 영유아 보육수당에는 출산(입양)보조금, 0~3세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소득자산조사 급여,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추가수당, 보육형태에 따른 추가수당 등이 포함된다.

① 출산 또는 입양 보조금(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자녀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자산조사급여이다. 급여액은 기본가족급여의 229.75%인 €868.13(약 1,648천원)이다. 출산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14주 검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소득상한선은 (출산 예정) 자녀수에 따라 다르고, 부모 모두 일하거나 한부모일 경우 상한선이 더 높다. 2008년 1월 기준으로 소득상한선은 한부모 한 자녀 가구의 경우 연 €42,722(약 91,121천원)이다.

② 영유아 기본 급여(Allocation de base)

출산보조금 지급 이후에 3세까지 지급하는 소득자산조사 급여로, 출산 후 8일, 9개월, 24개월에 병원 검진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소득 상한선은 출산보조금 소득 상한선과 같다. 급여액은 기본가족급여의 45.95%인 월 €173.63(약 330,000원)이다.

③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추가수당과 선택적 추가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CLCA) et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COLCA))

이 수당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 영유아 기본 수당에 더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2006년 7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부모가 있는 경우 선택적 추가 수당(COLCA)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어야 지급되며 급여액은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추가수당(CLCA)보다 높지만 기간

은 짧다. 두 급여 모두 첫 자녀 출산 전 2년의 근로경력(둘째 자녀 출산 전 4년 중 2년 근로경력/ 셋째 자녀 출산 전 5년 중 2년의 근로경력)이 있어야 한다. CLCA는 첫째 자녀의 경우 6개월간 지급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지급될 수 있다. COLCA는 1년간 지급된다. 기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의 경우 CLCA에 기본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다. CLCA는 일을 완전히 그만둔 경우 €538.72(약 1,023천원)를 받고 파트타임인 경우 €409.64(약 778,000원)를 받는다. COLCA는 €770.38(약 1,463천원)이다.

④ 보육형태에 따른 추가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이 수당은 등록된 보육교사의 집이나 미혼모 자신의 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급된다. 급여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기본 수당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급여는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사회보장기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가 수당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는 100% 지급되고 3세~6세까지는 급여의 일부분만 지급된다.

### 3) 특별 수당

①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éducation de l'enfant handicapé)

소득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20세 이하의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수당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액은 월 €120.92(약 229천원)이고, 장애급수가 높은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한 독신부모에게는 더 높은 액수의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② 학업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18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일정 소득 미만이면 소득액과 자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급여액은 최고 월 €276.67(약 525천원)이다.

③ 아픈 자녀 돌봄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아픈 자녀가 있는 독신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면 매일 €47.72(약 9만원)를 지급하고 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액보다 조금 많다. 총 3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질환 정도에 따라 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주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주거 비용 지급 방식, 주거 비용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⑤ 이사급여(Prime de déménagement)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되는 소득자산조사 급여로 이사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이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이 이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선은 €906.86(약 1,722천원)이다.

#### 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① 출산휴가(Le congé maternité)

출산휴가는 출산 후 고용이 보장되는 휴가로서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 16주, 셋째, 넷째 자녀 출산시는 26주이다. 출산휴가급여는 상한선 안에서 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Le congé parental)

육아휴직은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다. 첫째 자녀의 경우 6개월, 둘째 자녀부터는 최고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째 자녀에게는 무급으로 제공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정액으로 지급된다.

#### 5) 보육서비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혼모가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립 또는 사립 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crèches collectives), 부모협동보육시설(crèches parentales),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s), 비정기적 탁아소(halte garderies), 복합보육시설(établissements multiaccueil), 가정어린이집(crèches familiales), 유아원(jardins d'enfants) 등이 있고 소득, 자녀수, 보육시간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지불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민간 개인 보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베이비시터, 가족 보육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당(보육형태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다. 영국[4)]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10대 미혼모 비율이 높아 이를 다른 유럽 국가 수준으로 줄이고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

4)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와 http://www.surestart.gov.uk/를 참조하였다.

로 통합적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허남순 외, 2005). 또한 다른 유럽국가들이 한부모가구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영국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다른 형태의 빈곤율보다 매우 높아(Cantillon & Bosch, 2002) 한부모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고용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10대 미혼모 대책에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 미혼모 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 정책, 10대 미혼모의 양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미혼모 양육지원정책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1) 10대 임신 관련 정책(Teenage Pregnancy Strategy)

영국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건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어린이는 소중하다"(Every Child Matters)라는 표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 안전, 여가, 경제적 환경 등 하위 분야 중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의 하위 목표 일환으로 10대 임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0대 임신 관련 정책의 목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2010년까지 18세 미만 임신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0년까지 10대 부모의 교육, 훈련, 고용 수준을 60%까지 끌어 올려 이들의 사회적 배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미혼모 양육 지원정책은 바로 이 후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자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미혼부모가 출산한 자녀들의 건강 증진, 10대 미혼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10대 미혼부모의 경제적 복지 증진 등의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①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 EMA)

기본적으로 EMA는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EMA는 급여 대상자의 통장 계좌에 1주일에 £10~£30를 지급하고 급여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EMA를 받으려면 학교에 출석해서 수업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업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MA 자격 조건은 크게 연령, 교육・훈련 과정, 가구 소득의 일정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연령은 16세~18세로 학교를 떠났거나 정규 교육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EMA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등록해야 하고, 파트타임 근로를 해도 수당은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연 £30,810(약 65,908천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소득이 £20,817 미만이면 주당 £30을 받을 수 있고 £20,817~£25,521이면 £20를 받을 수 있다. EMA를 받는다고 해서 여타 아동양육 관련 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학생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Care to Learn)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20세 미만의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학교를 다닐 동안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런던의 경우 1주일에 자녀 1인당 £160(약 342천원)를 지급해 준다. 학업 과정은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대학 모두 가능하고 풀타임/파트타임, 교육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Care to Learn"은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중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보모, 놀이집단, 유아원, 방과후학교, 보육센터 등 시설 형태는 무관하나, 반드시 등록 보육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실은 책자도 제공된다.

③ 준독립주택(supervised semi-independent housing) 제공

'사회적 배제 위원회'(The Social Exclusion Unit)는 2003년까지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10대 미혼부모들이 준독립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입주 가능한 주택은 Grangeway Court 뿐이다. 그래도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개발에 더욱 힘쓸 것으로 보인다.

④ Sure Start Plus

Sure Start Plus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2001년 10대 임신율이 높은 35개 지방정부에서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0대 임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고 주택, 건강, 돌봄, 부모교육, 고용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상담가(Sure Start Plus Adviser)가 종합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금연, 수유, 상담, EET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 결과 가족 중재, 가정폭력, 주거, 학교 복귀 등의 영역에서 적절한 위기 개입을 한 것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① 소득 보조(Income Support: IS)

일하지 않거나 16시간 이하로 일하는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18세 이상인 한부모는 주당 £60.5(약 129천원), 18세 미만인 한부모는 £47.95(약 103천원) 지급된다. 저축액이 £16,000 미만이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 2008년 11월부터는 가장 어린 자녀가 12세 이상일 경우 IS가 아니라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s:JSA)을 신청해야 한다. 2009년 10월부터는 가장 어린 자녀가 10세를 넘었으면 IS를 신청할 수 없고, 2010년 10월부터는 가장 어린 자녀가 7세를 넘으면 IS를 신청할 수 없다. IS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관련 초점집단 인터뷰(Work Focused Interview)에 참여해야 하며 이 인터뷰

는 6개월에 1번 이루어진다. 가장 어린 자녀가 11세 이상이면 3개월마다 인터뷰에 참여해야 한다. IS는 Income Support Personal Allowance, Child Tax Credit, Child Benefit으로 전환될 것이다.

②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IS와 달리 J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해야 하며 2주에 한번씩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한다. JSA에는 기여 방식과 자산조사 방식 2가지 급여 지급방식이 있다. 피용자라면 기여 방식의 JSA를 수급하게 되고 피용자가 아니라면 자산조사 방식의 JSA를 수급한다. 자산조사방식의 JSA도 최소한 일주일에 16시간은 일해야 하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8세~24세 독신부모는 주당 £47.95를 받고 24세 이상 수급자는 £60.5를 받는다.

③ 아동 부양비(Child Support)

IS나 JSA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아동부양비를 신청하게 된다. 2003년 3월부터는 아동부양비 신청자들에게 IS에 더하여 주당 £10의 부양비가 지급되었다.

④ 아동 수당(Child Benefit)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주당£12.55~18.8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⑤ 아동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CTC)

독신부모가 IS 또는 JSA를 받는다면 독신부모의 자녀에게는 CTC가 지급된다. 이 세액 공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국세청 또는 Jobcenter Plus를 통해 지급된다. 16세 미만 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이 연 £50,000 이하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세액 공제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가족요소(Family element)는 모든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주당 £10.5, 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두배가 지급되어 주당 £21를 환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동요소(Child Element)는 자녀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녀 1인당 주당 £40.04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장애아동요소(Disabled Child Element)로 장애수당을 받는 아동의 경우 주당 £48.72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중증장애아동 요소(Severely Disabled Element)로 주당 £19.6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⑥ 모자보건(Healthy Start)

Healthy Start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우유와 비타민을 제공하는 것으로 £3의 바우처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다.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10주 이상 18세 미만 또는 임신

10주 이상 18세 이상이면서 IS, JSA, CTC 등을 수급하는 경우,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4세 미만 아동이다.

⑦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2002년 9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아동신탁기금 계좌가 지급된다.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신탁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250가 지급되고 가구소득이 £15,570 미만일 경우 추가로 £250가 더 지급된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1년에 £1,200까지 후원받을 수 있다. 이 계좌에 적립된 기금은 아동이 18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다.

⑧ 출산보조금(Maternity Grants)

IS, IB-JSA, CTC의 수급자격이 있는 독신모에게는 임신 11주 전~출산 3개월까지 £500의 출산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모성 급여(Statutory Maternity Pay:SMP)와 모성 수당(Maternity Allowance)

출산 전후 39주간 모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주간은 임금의 90%까지 보상받는 모성 급여를 받을 수 있고 33주간은 주당 £117.8 또는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출산 15주 전까지 26주간 근로경력이 있어야 하고 주당 £9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성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독신모에게는 모성수당이 지급된다. 모성수당은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그러나 모성 수당 역시 적어도 66주 중 26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소득은 주당 £30 이상이어야 한다. 39주간 임금의 90% 또는 주당 £117.18를 받는다.

⑩ 슈어 스타트(Sure Start)

슈어 스타트는 자녀 양육, 교육, 건강, 가족지원 등에서 최상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교육・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슈어스타트 서비스 전달의 주요 책임 부처이다. 자녀 양육, 교육 등과 관련하여 영국의 각 지역에서 보편적이면서 선별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게 3가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합적 영유아동 서비스 제공, 조기교육, 보육센터 운영이 그것이다.

통합적 영유아동 서비스 제공이란 아동 보육시 조기교육, 건강, 가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슈어스타트 아동 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er)에서는 각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양질의 조기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3월까지 2500개의 아동센터가 설립되었고, 230만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기교육센터를 통해

3~4세 아동이 무료로 조기교육을 받고 있다. 주당 교육시간은 12.5시간이고,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민간, 제3섹터 조기교육센터는 37,000여 곳에 이른다. 보육센터는 2008년 6월 130만 곳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1997년 당시 보육센터 수의 2배 가까이 된다. 슈어스타트의 대상은 태아~14세 아동이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6세까지 대상이 된다.

⑪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 NDLP)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은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직, 파트타임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업상담, 구직상담, 인터뷰 기술 습득, 직업훈련(13주), 인턴쉽 등의 고용훈련 프로그램과 아동양육비용 보조 등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양육비는 6개월간 주당 £60~£75 지급된다.

### 라. 호주[5)]

호주 역시 스웨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부모 가족' 또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부모가구의 독신모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혼 여성, 사별한 여성 등이 포함되지만, 호주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22%가 한부모 가구이고, 한부모가구의 82%가 미혼모이기 때문에(Stanley & Taylor, 2008)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 1) 출산보조금(Baby Bonus)

출산보조금은 출산·입양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부모가 아니더라도 26주 이내의 영아를 돌보고 있거나 자녀 출산 후 6개월 이내 소득이 $75,000 이하이면서 호주에 거주해야 한다. 보조금 급여액은 한 자녀당 $5,000이고 26주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제공된다. 출산보조금은 과세가 면제되고 사회보장급여 계산시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 2) 독신모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Parenting Payment Single or Newstart Allowance)

이 급여는 가장 어린 자녀가 학령전 연령인 한부모 가구에 지급되며 2주에 최대 AU$546.80(약 525천원) 지급된다. 소득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주에게 지급되는데 대부분의 독신모들이 파트타임 근로를 하기 때문에 최대 급여액을 다 받는 독신

5) 호주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Stanley & Taylor(2008)와 호주 가족급여 안내 홈페이지 사이트(http://www.familyassist.gov.au/)를 참조하였다.

모는 드물다. 급여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최연소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근로 조건'이 필요하다.

### 3) 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이 세제혜택은 아동양육비용을 일정 정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다. 세제혜택은 Part A와 Part B로 나뉘는데, Part A는 아동별 급여로서 자녀 연령, 소득, 돌보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2주에 최대 AU$196.84(189천원)가 지급된다. 독신부모는 함께 살지 않는 자녀의 부모에게 아동 부양비를 받아야 하고 이 부양비를 받지 않으면 Part A 세제혜택은 AU$ 48.3까지 감소한다.

Part B는 가구별 급여로서,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한부모 가족 또는 홀벌이 가족에게 지급되며, 2주에 최대 AU$128.8(약 12만원)이 지급된다.

### 4) 주거비 지원(Rent Assistance)

세제혜택 part A의 기본 급여를 받는 경우 2주에 최대 $142.38(약137천원)까지 지급된다.

### 5) 양육비 지급 이행(Child Support Scheme)

양육비 지급 이행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미혼모가 친부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거나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였으나,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비용의 소모 없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연령, 자녀 수, 부모가 돌보는 시간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미혼모가 친부에게 직접 받거나 아동 양육비 지급 대행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ley & Taylor, 2008).

### 6) 아동양육수당(Child Care Benefit)

아동양육수당은 아동이 인증받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때 보육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이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예방접종의 조건, 거주 조건, 인증받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AU$36,573(약 35,098천원) 이하이면 보육시간 50시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주당 $173.5(약 167천원)~$188.65(약 181천원)의 급여를 받고, 보육시간이 늘어나면 시간당 $3.47~$3.77 정도가 증가한다.

### 7) 육아휴직급여

호주에서는 직장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14주 동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AU$522를 육아휴직급여로 지불한다. 2010년부터는 부부가 총 34주(8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받게 되고 여성이 아이를 낳기 전 받았던 임금의 3분의 2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될 것이다. 가정주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지만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보너스($5,000)와 다른 혜택들은 제공된다.

### 8) 공적의료보장제도(Public Helath System)

호주는 영국과 같이 공공의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의사, 약사 진료 및 처방시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보장제도는 한부모가족, 미혼모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 마. 일본

일본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미혼모 발생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만을 위한 특화된 법이나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은 모자가정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모자가정은 <모자 및 과부 복지법>에 근거하여 각종 세제혜택, 취업교육, 주택보호, 소득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급여의 수준이 낮고 엄격한 소득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최근 일본 정부는 모자가정 등에 대해서 육아・생활지원책, 취업지원책, 양육비 확보책, 경제적 지원책의 4가지 종합적인 모자가정 자립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2008년도에는 <모자 및 과부 복지법>에 근거하는 기본방침을 새롭게 정하고 취업지원책을 보다 확충하는 것을 계획하였다(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11월호).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지원정책과 모자가정취업지원책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 1) 출산보조금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보조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산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모가 일단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뒤 출산 후 건강보험기관 등으로부터 출산육아 지원금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출산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30~35만엔이었으나 2008년 이를 대폭 올려 42만엔까지 한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기위한 긴급 조치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에는 출산비용의 보험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 2) 아동수당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에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비록 그 대상이 유럽의 아동수당에 비하면 소득기준이 있고 수급 대상 연령이 낮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는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소득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4년 6월 개정을 통해 대상 아동의 수급기간을 의무교육 취학 전에서 3학년 수료 전까지로 확대하였다(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본래 아동수당이 둘째 자녀까지는 5천엔,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1만엔이 지급되었으나 2007년 1월부터 3세 미만 첫째, 둘째 자녀에게는 1만엔(약 16만원), 3세 이상 첫째, 둘째 자녀에게는 5천엔, 셋째, 넷째 자녀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1만엔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3) 아동부양수당제도

아동부양수당제도는 모자가정의 생활안정 촉진 및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제한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아동 1명인 모자가구의 소득이 57만엔(약 9,162천원) 미만일 경우 수당 전액인 42,362엔이 지급되고, 소득이 57만엔~230만엔(약 36,972천원)인 경우 수당의 일부(1만~2만2360엔)가 지급된다(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 4) 모자과부 복지 대출

<모자 및 과부 복지법>에 근거하여 독신모 및 과부를 대상으로 모자과부복지대출 규정을 두고 모자 및 과부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금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모자가정의 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생활의욕을 강화하며 부양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학자금, 사업개시자금, 주택자금, 사업계속자금, 기능습득자금, 수업자금, 취학지도자금, 요양자금, 의료개호자금, 생활자금, 이사자금, 취학지도자금, 특례아동부양자금 등 총 13종류가 있다(김유경・조애저・노충래, 2006). 우리나라의 창업자금지원에 비해 그 용례가 다양한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5) 모자가정 취업지원책[6)]

① 모자가정 등 취업, 자립지원센터 사업

모자가정의 '모' 등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에서부터 취업지원강습회, 취업정보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의 실시 주체는 도도부현, 정부지정도시, 중핵시이다.

② 모자자립지원 프로그램 책정 등 사업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 자립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모자가정의 '모'의 실정에 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책정해 헬로워크(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상담소)나 모자가정 등 취업 및 자립지원센터와 긴밀하게 제휴하면서 치밀한 취업지원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바로 취업으로 이행하기 곤란한 모자가정의 '모'에 대해서는 NPO 법인 등과 제휴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의 참가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의 양성 등을 도모한다.

③ 자립지원 교육훈련 급부금 사업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교육훈련 강좌를 수강한 모자가정의 '모'에 대해서 강좌 수료 후에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한다.

④ 고등기능훈련 촉진비 등 사업

간호사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년 이상 양성기관 등에서 수학하는 경우 생활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기능훈련 촉진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입학금 부담을 고려한 입학지원수료 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상용고용전환장려금 사업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모'를 OJT 실시 이후 상용고용 근로자로 고용전환한 사업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로 미혼모 양육지원정책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미혼모'를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아동 출산에 대한 '적법성'과 '불법성'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미혼모'라는 정책 대상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또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심지어 아동양육비 지급 이행 제도 외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정책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보편적 또는 선별적 급여를 지급하고 광범위하고 질 높은 보육 인프라를 통해 가족

6) 이 부분은 한국노동연구원(2008)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의 <세계노동소식> 일부를 발췌하였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스웨덴에 비해서는 보편적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요보호아동급여(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한부모가족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 등 독신모에 대한 특별한 급여도 마련되어 있다. 최근 '미혼모'에 대한 법적 구분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급여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대부분 2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제도가 많은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는 자녀수에 관계 없이 지급하여 한부모 가족 또는 미혼모 가족의 높은 욕구를 양육지원제도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급여도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특히 최근 '미혼모'에 대한 여러 정책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미혼부모'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부모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미혼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영국의 소득보장급여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해 대상 선정이 선별적이고 급여액이 낮은 반면 최근 슈어스타트, 뉴딜정책 등을 통해 아동 보육, 취업지원 등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특히 10대 미혼모에 대한 교육유지수당, 돌봄수당, 슈어스타트 플러스 등은 10대 미혼모의 교육과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마련된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호주는 아동수당을 폐지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게 특별한 급여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제도 형태는 영미권 국가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무료의 공공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2008년 육아휴직제도를 유급으로 마련하여 일하는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미혼모 양육지원제도를 갖고 있다. 즉 유럽 국가와 달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면서도 미혼모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없으며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매우 잔여적이고 급여・서비스 면에서도 불충분하다. 다만 아동수당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표 3>과 같다. 각 수당의 급여액을 국가간 비교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국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제시하였다. 출산보조금의 경우 일본과 호주가 매우 높고, 아동수당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아동이 있는 가족 모두 프랑스가 종류도 많고 급여액도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 〈표 1〉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각종 수당 내용 국가별 비교(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제외)

| 국가명 | | 스웨덴 | | | 프랑스 | | | | 영국 | | | | 호주 | | | 일본 | | |
|---|---|---|---|---|---|---|---|---|---|---|---|---|---|---|---|---|---|---|
| 대상 구분 | 정책 구분 | 명칭 | 월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비고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비고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 아동이 있는 가족 | 임신 수당 또는 출산 보조금 | pregnancy cash benefit | - | - | Prime □ la naissance ou □ l'adoption | € 863.13 | 33.70% | | Maternity Grants | £500 | 10.50% | | Baby Bonus | $5,000 | 105% | 出産 補助金 | ¥42만 | 142% |
| | 아동 수당 | 아동수당(Child allowances) | SEK1050 | 3.50% | 가족수당 (Allocations familiales) | € 120.92 | 4.70% | 자녀 2명이상, 20세 미만 | 아동수당 (Child Benefit) | £75.2 | 2.80% | | 가족세제 혜택(Family Tax Benefit) | $196.84 | 8.30% | 兒童 手當 | ¥5000 | 1.70% |
| | | | | | 다자녀수당 (Allocation forfaitaire) | € 76.46 | 3%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 중 첫째 자녀가 20세가 되어 급여 감소할 때 지급 | 아동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 £202.16 | 7.50% | 자녀1 인가족 | | | | | | |
| | | | | | 소득보충급여 (Compl□ment familial) | € 157.38 | 6.10% | 소득자산조사, 3명이상자녀3~21세인경우 | | | | | | | | | | |
| | 아동양육수당 | 아동양육수당 (Child-raising allowance) | - | - | 영유아기본수당 (Allocation de base) | € 173.63 | 6.70% | | | | | | 아동양육 수당(Child Care Benefit) | $694 | 25.70% | 兒童扶養 手當 | ¥42362 | 14.30% |
| | | 장애아동부양 수당 (Childcare allowances) | SEK8541 | 28.30% | 장애아동교육수당(Allocation d'□ducation de l' enfant handicap□) | € 120.92 | 4.70% | | | | | | | | | | | |
| | | | | | 경제활동형태에 따른 추가수당과 선택적 추가수당 (CLCA et COLCA) | € 538.72 | 20.90% | | | | | | | | | | | |
| | | | | | 보육형태에 따른 추가수당(Compl□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보육교사임금의 일부~전체 | | | | | | | | | | | | |
| | | | | | 학업수당(Allocation de rentr□e scolaire) | € 276.67 | 10.70% | 소득자산조사, 18세 이하 자녀 취학시 | | | | | | | | | | |

| 국가명 | | 스웨덴 | | | 프랑스 | | | | 영국 | | | | 호주 | | | 일본 | | |
|---|---|---|---|---|---|---|---|---|---|---|---|---|---|---|---|---|---|---|
| 대상 구분 | 정책 구분 | 명칭 | 월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비고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비고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 | 주거 비용 | 주거수당 (housing allowance) | SEK2500 | 8.30% | 주거수당(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 - | - | | | | | | 주거비 지원 (Rent Assistance) | $284.76 | 6% | | | |
| | | | | | 이사급여 (Prime de d□m□nagement) | € 906.86 | 35.20% | 3명이상자녀, 소득자산조사 | | | | | | | | | | |

## 〈표 2〉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수당과 혜택

| 국가명 | | 스웨덴 | | | 프랑스 | | | | 영국 | | | | 호주 | | | 일본 | | |
|---|---|---|---|---|---|---|---|---|---|---|---|---|---|---|---|---|---|---|
| 대상구분 | 정책구분 | 명칭 | 월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비고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비고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 대비비율 |
| 한부모가족 | 양육비 지급 이행 | 양육비지급 (Maintenance Support) | SEK1273 | 4.20% | | | | | | | | | 양육비 지급 이행(Child Support Scheme) | | | | | |
| | 소득 지원 | | | | 요보호아동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 85.02 | 3.30% | | 소득 보조 (Income Supoort:) | £242 | 9% | 소득자산조사 | 독신모에게 지급되는 기본 급여(Parenting Payment Single or Newstart Allowance) | $1,094 | 23% | | | |
| | | | | | 한부모가족급여(Allocation de parent isol□) | € 755.72 | 29.30% | 소득자산조사 | 구직자수당 (Jobseeker's Allowance) | £242 | 9% | 피용자 방식 /소득 자산 조사 방식 | | | | | | |
| | | | | | 아픈 자녀 돌봄 수당(Allocation journali□re de pr□sence parentale) | € 1,431 | 55.60% | 휴직시 | 아동부양비 (Child Support) | £40 | 1.50% | | | | | | | |
| | 양육비 지원 | | | | | | | |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New deal for lone parents: NDLP)중아동 양육비 | £300 | 11.10% | | | | | | | |

〈표 3〉 10대 미혼모에 수당과 혜택(영국)

| 명칭 | 급여액 | 평균임금대비비율 | 비고 |
|---|---|---|---|
|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 EMA) | £120 | 4.40% | 소득자산조사 |
| 학생 부모를 위한 돌봄 서비스(Care to Learn) | £640 | 23.70% | |
| 준독립주택(supervised semi-independent housing) | | | |

## 3.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 발달 배경과 사례-호주 CSMC를 중심으로[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미혼모 양육 지원정책의 수준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제도 발달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미혼모 양육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 보는 것만으로는 한국 상황 및 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선진적인 미혼모 양육지원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편견을 불식시킬 인식 개선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국과 같이 10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전략들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미혼모의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맥락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우선 미혼모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식 및 상황 개선을 경험한 선진국의 정책발달 초기 사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싱글맘과 싱글맘 아동 협회'(Council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CSMC)가 40년 전 경험한 다양한 미혼모 권익 신장 노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한국 상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가. CSMC의 발달 배경

40년 전 호주의 미혼모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회보장혜택이 없었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 가구에게만 한정되었고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는 아무런 소득지원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는 낙태를 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 것 밖에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사회적 지원은 출산 직후 미혼모 시설에서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뿐이었고, 이후 곧바

7) 이 부분은 지난 Stanley & Taylor(2008)의 일부를 정리하여 발췌하였다.

로 입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부로부터의 지지뿐이었는데 그나마도 가족이 '미혼모딸'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이 많았다. 사회로부터 미혼모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에 시달렸다.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은 '미혼모'임을 숨기거나, 결혼했거나 사별한 것처럼 행세해야 했다(Stanley & Taylor, 2008).

이러한 배경에서 CSMC의 초기 회원들이 탄생했다. CSMC의 초기회원들은 미혼모였지만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CSMC의 핵심 멤버였던 Sandy Fitts는 임신 6개월에 병원에서부터 '미혼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별을 경험했다. 마찬가지로 핵심 멤버였던 Rosemary West는 1962년 돈이 떨어져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찾아가 사회복지급여를 요청했으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받았던 초기 멤버들은 멤버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해 줄 단체가 없는지 모색하였다.

가장 먼저 그들이 찾았던 곳은 이혼·별거 여성을 지원하는 '어머니를 지지하는 모임'(The Supporting Mothers Association)이었다. 그러나 이 집단은 '핵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가족형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미혼모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다음에 그들이 찾았던 곳은 Melbourne의 독신부모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사회복지사인 Eric Benjamin이 결성한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 역시 미혼모들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이 모임은 단지 '사교적' 목적을 위한 모임이었을 뿐 '정치적' 변화를 꾀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들은 1969년 Melbourne Herald지(誌)에 미혼모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다는 광고를 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모임은 자조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데 더하여 미혼모를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혁을 꾀하였다. 회원들의 처음 반응은 "스스로 받았던 편견과 달리 함께 모인 회원들은 너무나 '정상적'이었고, 똑똑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었다.

1969년 CSMC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고 이 모임의 정회원 자격은 미혼모였거나 미혼모의 자녀인 사람들로 제한되었다. 전문가 자문 그룹이나 그외 미혼모가 아닌 회원들은 미혼모를 위한 '헬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이들은 '미혼모'(unmarried mother)라는 용어를 '독신모'(single mother)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이 모임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1970년 100명이었던 회원이 1972년에는 1000명까지 증가하였다. 1973년에는 조직의 목적과 목표[8]를 공식화하였다. 이렇게 조직의 목표를 공식화한 CSMC는 이후 미혼모를 위한

8) 1. 법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인생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2. 독신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 사회, 법적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독신모가 임신기간 또는 그 이후에 정서적 지지를 받기 위해 자녀가 양육되든 입양되든 (1) 필요한 숙소 제공, (2) 법적 권리를 위한 정보 제공 (3) 긴급 보호·이동 서비스 제공 (4) 긴급 재정지원 제공 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독신모들이 서로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5. 아이를 양육하든지 입양하든지 독신모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

정책 도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 나. CSMC의 정책 입안 활동

1972년 연방 선거에서 CSMC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을 사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독신모들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도인 캔버라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73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급여제도(Supporting Mothers Benefit)가 마련되었다. CSMC는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도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펴 나갔다. 그 당시 미혼모 자녀에게는 동등한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CSMC의 꾸준한 입법개혁 활동으로 1970년대 말까지 미혼모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은 철폐되었다.

1973년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협회(National Council for the Single Mother and her Child)가 설립되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정책 도입·개혁을 주장하였다. 끊임없는 입법·제도개혁 활동을 통해 CSMC와 NCSMC는 급여의 물가 인상 연동, 미혼부에 대한 지원, 모든 형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 제공, 소득에 따른 급여 공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보육서비스' 역시 CSMC/NCSMC에서 중요하게 주장했던 정책 분야이다. 충분한 보육서비스 없이는 독신모들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970년대 보육서비스 확충 또는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1989년에 도입된 '양육비지급이행제도' 역시 CSMC에서 로비활동을 통해 요구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미혼모의 70%가 친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양육비를 법정이 아닌 기관(Child Support Agency)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혼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아이와 함께 지낼 숙소, 아기 옷이나 분유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물품 후원이나 양육을 위한 정보 제공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CSMC의 활동이다.

### 다. 현재 CSMC의 활동 내용

CSMC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활동하는 NCSMC(National Council of Single Mother and Children)와 빅토리아 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CSMC로 나뉠 수 있다. 우선 NCSMC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비를 조달하고 국가 위원회(Center link, Child Support Agency, Families South Australia 등)에 미혼모를 참여시키고, 미혼모를 대표하여 미혼모

---

어야 한다. 6. 독신모의 교육, 훈련, 자존감 향상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7.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며 친부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 8. 독신모와 그 자녀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서베이와 연구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9. 독신모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들과 협력한다. 10. 국내외 독신모 지원 협회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한다.

의 권익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미혼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조사에 참여하며, 정부나 다른 서비스 단체와 연합하여 활동하고, 언론을 통한 권익 옹호 활동,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CSMC는 빅토리아 주에서 주로 활동하고 빅토리아 주정부의 교육·보육 부서와 긴밀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18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의 상근 직원과 5명의 파트타임 간사가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다. 상근 직원은 협회 정회원 또는 그 자녀가 맡고 있다. CSMC의 활동 내용은 전화 상담, 긴급 재정 지원,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송, 정부 정책 혜택에 대한 매뉴얼("Life with Baby", "Parenting +16") 제공, 통계자료 제공, 크리스마스 장난감 선물, 지지 집단 결성, 연구 조사 참여, 각종 강연·강의 활동, 미혼모의 사회 참여를 위한 이벤트 마련, 독신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정책 사례 수집, 언론 홍보, 정부·지역사회 위원회 참여, 정책결정과정 참여, 정부 조사 협조, 로비 활동, 그밖에 연극, 다큐멘터리 촬영,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여성 교도소 아웃리치, 사진 전시회, 무이자 소액 대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4. 한국 미혼모 양육 지원 정책에의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모 양육지원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혼모 양육지원정책은 국가의 전체적인 복지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은 보편적·제도적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정책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모는 이러한 제도들(부모휴가급여,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출산보조금, 장애아동부양수당, 주거수당 등)을 통해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수당, 소득자산제도급여 등 다양한 방식의 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급여액도 월평균임금의 30% 정도로 매우 높다. 영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은 낮으나 슈어스타트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꾀하였고 특히 10대 미혼모를 위한 교육지원, 돌봄지원, 주거지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혼모양육지원정책이 발달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혼모가족이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으나 최근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양육지원정책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아동이 있는 가족,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 수준은 영국,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호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40년전 결성한 <싱글맘과 싱글맘아동협회(CSMC)>의 꾸준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CSMC는 미혼모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무엇보다 미혼모·자녀에게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소득·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이 협회를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정부·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유도하며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미혼모양육지원정책과 정책발달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환경과 미혼모양육지원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 등의 대상 구분 없이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양육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는 한부모가족(미혼부모가족)을 위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에게 월평균임금의 20~30% 수준의 별도의 양육비 또는 소득 지원을 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월 5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의 1.6% 수준)의 아동양육비와 학비 지급에 그치고 있다. 미혼모가 아동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혼모가족(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양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호주의 CSM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집단 또는 후원모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가족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미혼모와 자녀들을 위한 자조집단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전문가들은 이들의 대변자·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는 이혼·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과는 또 다른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특별한 개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의 슈어스타트플러스(Sure Start Plus)는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책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이 10대 미혼모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이를 연령대별로 달리 적용하여 10대 미혼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위험을 줄이고 주택, 건강, 돌봄, 부모교육, 고용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전문 상담가(영국의 경우 Sure Start Plus Adviser)가 종합적인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금연, 수유, 상담,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미혼모에 대한 소득 보장, 양육비 지원 등 현금 급여 수준도 열악하지만 미혼모가 교육,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확대시켜야 한다. 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를 통한 복지정책의 대상이 미혼모, 한부모인 경우가 많다. 미혼모 가족 역시 결국 고용을 통해 스스로 지속적인 생계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과 훈련, 교육에 대한 지원은 미혼모 가족의 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일본의 한부모가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영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뉴딜 정책 등도 바로 고용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상과 같이 선진국의 미혼모양육지원정책과 발달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 상황과 정책에 대한 함의를 간략히 도출해 보았다. 모든 복지정책의 기본 전제는 정책 대상이 정책을 통해 제공하는 급여・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미혼모와 그 자녀 역시 이 사회에서 존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다. 가족을 이뤄 살 만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복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행보를 더욱 더디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은화(2006).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3호. 한국여성학회.

김수정(2008).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 연구(홍승아 외). 한국여성개발원.

김유경・조애저・노충래(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영(2008).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인선(1998).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한국모자보건학회 제3차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모자보건학회

이미정(2008).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인영(1998).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한국모자보건학회 제3차 춘계학술대회 연제집,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노동연구원(2008).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세계노동소식>

허남순・노충래・허소영・조수민(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Cantillon, B. & K. Bosch(2002). Social Policy Strategies to Combat Income Poverty of

Children and Families in Europe. LIS Working Paper No. 336.
Gonzalez, L.(2005). The Determinants of the Prevalence of Single Mothers: A Cross-Country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1677.
Jones, S.(2007). Excercising Agency, Becoming Single M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of Unmarried Women. Marriage & Family Reivew. Vol. 42(4).
Stanley, J. & A.Taylor(2008). Single Mothers in Australia: Changes and Challenges. 제1차 싱글맘 정책을 위한 외국전문가 초청 Workshop 자료집.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2005). Social Insurance in Sweden.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 웹사이트

스웨덴 사회보장청 사이트(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
영국 슈어스타트 사이트 http://www.surestart.gov.uk/
영국 아동・학교・가족부서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
프랑스 Center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Liasons for Social Security(www.cleiss.fr)
호주 가족급여 안내 홈페이지 사이트(http://www.familyassist.gov.au/)

◈ 발 표 4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 Building Support for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US Reducing Stigma-Increasing Services: An Overview

Cheryl Mitchel Professor, University of Vermont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of joining you today, to talk about my experience and research supporting unwed mothers, their babies, and their communities. I am so honored to be part of this discussion with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d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of meeting and working with President Kim, Dr. Lee, Dr. Kim, Dr Boas, and the other wonderful people who are addressing critical issues from a place of compassion and a commitment to deep understanding of many perspectives.

I am joining you today, not as an expert on adoption; although I have had many personal and professional interactions with adoptees, adoptive families, and birth parents. And certainly not with any pretence of knowing about Korean history and culture, although I have been reading diligently and look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about all the wonderful supports and services you have been able to develop. My background rather, is as a clinician, policy maker, and researcher about the needs of parents and children during the years of pregnancy,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nd about the ways in which communities can best create supports and services so that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ll grow up as healthy, thriving,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It has been a great privilege and blessing to live in the state of Vermont, which because of its small size, its strong commitment to hard work, and its traditions of neighbors helping neighbors, has often served as a laboratory for social changes that later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My husband and I moved to a farm there 35 years ago, and I began work as the director of a community based childcare program. We took care of children aged three to twelve, who attended while their parents were working or finishing school. At that time, more than half the children lived with two parents at home, both of them working hard to earn enough money to support their families. Some children had parents who were legally divorced; many lived in families that had been deserted by the father. Increasingly children lived with and were supported by a single mother. Often she was very young, had birthed the child before finishing school, and was now living alone with out the support of the child's father or her own extended family. Typically she would be working at a low wage job, with long and erratic hours, and no benefits such as health insurance, vacations, or sick days.

By the time children were toilet trained and old enough to be enrolled in our program, most of these women had worked out fragile support systems. They frequently expressed howgrateful they were that their children had a "second home"in our program that provided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nutritious meals, good early education, and attention to health. But increasingly, unwed mothers would show up in my office crying, saying that they were pregnant, that they couldn't face the idea of an abortion or relinquishing their child for adoption, that the baby's father had left them, and that they were frantic about where to turn for help. Women were begging for care for younger andyounger children (which we could not legally provide) so that they could get jobs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babies.

I was fortunate to be working in Vermont and in the child care field in the 1970's, just as cultural currents in America were beginning to shift toward supporting unwed women in a thoughtful way. As a result, our community was able to create a support program -- we called it a Parent/Child Center -- which eventually became the model for the rest of the state, and has show amazing positive results for women, their children, and the whole community.

Before I describe that program in more detail, I'd like to go back and briefly recap the history of the culture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that made it possible to begin this service 30 years ago.

Issues of unwed pregnancy have obviously been with us sinc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was created in the long distant past. Once our society determined that the best situation for raising children was within a married family, there have been many nuances to the way we viewed children born outside of that context. The United States is a relatively young country and when it became an independent nation in 1776, children were still considered the property and responsibility of their fathers. Womenat that time gave up their rights to property when they married, and although they may have had occupations such as a school teacher in their youth, they were not permitted to work after marriage. Children born outside of wedlock were termed "bastards" They had no rights of inheritance, they were shunned by society their mothers were considered evil or immoral women and were frequently condemned by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rest of the community. I realize, however, that the underpinnings of the patriarchal system in America were not nearly as deep and as strong as those faced by unmarried women and their children in Korea. And, although children of color and children living in poverty have had a long history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is has been less tru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than is perhaps the case here. So our experiences are similar but not matching.

During the Civil War period in America, (1860s) as men were forced away from home to serve in the armies, women became the bread earners of their families: running the farms, running the businesses, doing what needed to be done to keep the family intact and the community viable. Because so many fathers were killed in the war, the government instituted, for the first time, a system of supports for widows, to help them with raising their orphaned children. This support was available, however, only to women who had been legally married. Unmarried mothers continued to struggle and were most usually forced to turn their babies over to extended family member. It would have been quite typical for a mother and her child to be raised as "sisters"by the older generation. With the return of men to bread earning positions in local communities, and the gradual decline of the agrarian society, young women were increasingly likely to move to the big cities to work in the rapidly expanding industrial mills, where they could send money home to their struggling families, but where they were also subjected to horrendous conditions.

A number of women's associations began forming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800s: some were focused on abolition, some on women's suffrage, some on temperance, some on universal education, and some on world peace. The skills in developing programs and advocating for them that women gained through these associations was felt strongly in the ensuing years.

By the beginning of the 20$^{th}$century, two major social reform movements were underway: the Settlement House Movement (adopted from Great Britain) which was designed to easethe transition of the huge numbers of immigrants coming to America and the Maternity Home movement was initially designed to "rescue"the young women who had come to the cities but found themselves exploited by mill owners or forced into prostitution. Both movements were initially run by reformers pursuing moral or spiritual betterment, who were deeply concerned about promoting the well being of the girls,

woman and families they served. Most of them at that time believed there was a sacred bond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Both movements had a strong emphasis on teaching hygiene, health promotion, literacy, vocational training, domestic management, and parenting. There was a strong emphasis on strengthening the bond between mother and child by promoting breast feeding and providing a safe and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new mother-baby dyad.

Ironically for the support of unwed mothers, as public health and social work became more professionalized, the support systems designed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oppression were gradually replaced by a pathological view of young women who became pregnant out of wedlock. They were frequently seen as feeble minded or delinquent, and indeed there was a period during which young developmentally delayed woman were involuntarily sterilized to prevent them from having children. With the best of intentions the desire to intervene on behalf of what was then considere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became a driving force in separating children from their biological parents. By the 1950's and 60's in America, the economy was growing, women were less needed in the workforce, thousands of young families were moving into houses in the suburbs; and the media relentlessly broadcast the cultural norm of "family"as a fatherwho worked outside of the home, a mother who stayed in and two well behaved children. At the same time the media promoted a sexualized view of the world. But neither the media, the schools, nor families discussed what sexuality was, how pregnancies could be avoided, how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were spread, nor how girls and women (who were expected to be submissive at home) could avoid the pressures for sexual intercourse from boys and men who were almost never held responsible for the pregnancy.

For most of the girls and women who got pregnant during this era the two options were adoption (to avoid shaming the family) and early marriage, which often soon ended in divorce but which legitimized the birth of the baby. Because of the Comstock Law, contraceptives were not legally available in many states (even to married couples). To deal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nice girls"who had been impregnated (and who were obviously neither feeble-minded nor delinquent) the idea that these young women were "neurotic"and thus could not appropriately parent their babies emerged. Given the

growing demand for babies to adopt, this diagnosis helped everyone involved to believe that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was being met by the adoption. Abortion was an option only for the very wealthy (who would take their daughters to countries where it was legal) or the very desperate. Until the passage of Roe vs. Wade in 1973, 40% of all maternal deaths were caused by illegal abortions.

During this period the numbers of young women going to the maternity homes to wait out their pregnancies and typically to relinquish their babies increased to 25,000 girls a year and another 35% were turned away for lack of space. Reassured by social workers and extended families that they were doing the best thing for their child 80% gave their babies up and were sent home to "get on with their lives"The research about the long term outcomes of adoption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is not robust and shows as many varied outcomes as there are varieties of children and families.

However, it is clear that it was not universally the best thing for the birth mothers. Many could not "get on with their lives"and many suffered from a mix of psychological and relationship problems in later years. Perhaps the hardest part was the stress of "keeping a secret"even from those closet to them. Some of the typically reported psychological problems included: depression; damaged self-esteem; persistent guilt; emptiness and loss not erased by having other children; persistent loneliness or sadness; difficulty with intimacy, attachment, or emotional closeness; lack of trust; anger; severe headaches or inexplicable physical illnesses; and occasionall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utcomes for the adoptees is even less clear because the most vocal have been those who felt as if they suffered from debilitating feelings of abandonment. However, it is clear that children living in mixed race families, particularly children who attend schools in which they are one of the few children of the non-dominant culture, feel significantly devalued. As adoptees reach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nd begin wondering about issues such as genetics, family health histories, and where they "belong" in the world, the issues are exacerbated. The open adoption laws which have been gaining strength in the US are helping to alleviate some of these problems, but it is quite difficult for children adopted from other countries, who do not understand the language

and bureaucratic systems of their birthparent's homeland, to access those resources.

By the 1970's the culture was beginning to shift again, partly because birth control was becoming more available and abortion became a legal option in 1973. The feminist movement had a large role to play in supporting the rights of women: in the workplace, in reproduction, and in ability to parent children without a marriage partner. 1974 marked the year that American wages began to stagnate. As married women were forced into the out of home workforce to supplement the earnings of their husbands, supports such as publically funded child care and the beginnings of public health insurance programs for children began to emerge. No fault divorce laws were passed in a number of states so that the number of women raising children on their own was beginning to increase. With this increase came a lessening of the stigma on unwed mothers raising and caring for their children. Because of the economic uncertainties, the country enhanced its financial assistance, know colloquially as "Welfare,"to destitute families. An unanticipated result of these many changes was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pregnant teenagers who decided to keep their babies.

This trend, or epidemic as it was called at the time, was of major concern to the nation because all of the research to that point on outcomes for young, unmarried, mothers suggested that their babies were at huge risk for pre-term birth, birth defects, developmental delays, school failure, and later incarceration. I will add parenthetically that these bad outcomes were later found to be more related to lack of support than any inherent condition of the mother. Indeed it has now been shown that unwed women, with the proper support, give birth to healthy children and are able to raise them to be happy, healthy productive young people.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Addison County Parent/Child Center was created by a group of concerned community members with funding from a small Vermont Community Foundation grant and a large Federal Demonstration Program Grant. The theory, which proved correct, was that creating a program of comprehensive supports for pregnant teenagers and their children would increase positive outcomes for both mothers and babies. The program was designed by listening to struggling families about their experiences and needs and then trying to respond. It operated on a

Center/Outreach/Network Model.

The Center was housed in an old home that had been renovated for that purpose, it included child care rooms for babies six weeks to three years old, a kitchen and dining area, some small class room and office space, and a garage with two vans. A nurse midwife and several people who were parents themselves were hired to go throughout the community, knocking on doors, offering assistance, and recruiting families to join the program. Immediately, referrals began coming from school teachers and guidance counselors, Welfare workers, child protection workers, doctors and churches.; but within a year, the primary source of referrals was word of mouth from family members who had a niece or daughter who was pregnant.

Initially the staff worked mostly with unwed mothers in their homes, since they were often still too ashamed and fearful to be out in public. Staff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natal care, of helping to resolve conflicts about the pregnancy within the family, and of making a plan for supporting the baby once he or she was born. Once outreach workers had established a sense oftrust with the young mother, she would feel safe coming to the Center where she could attend preparation for childbirth classes, apply for benefits through the service network, get tutoring to finish school, get counseling, and perhaps most important, become part of a supportive community of other mothers and their babies.

This sense of community was nurtured through the child care program, where pregnant mothers worked along side professional caregivers to learn about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before their babies were born. They also participated in preparing meals that were enjoyed family style, and in meeting each morning with staff to discuss issues or to vent about problems. There was a clear sense of safety and warmth in the building, and also the vivid knowledge that each person who was there was both gaining knowledge and helping to create a better community for the babies. As people progressed through the program, their self-esteem grew, they completed school, they learn vocational skills, they resolved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y became heartfelt spokes people for families in other communities.

An external evaluation of the program showed that parents were becoming less dependant on Welfare, more able to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babies, more likely to use health care resources appropriately and more competent in life skills such as parenting, cooking, budgeting, driving a car, or maintaining an apartment.

For example, during the first decade, the incidence of child abuse dropped from 20to 2 %. The number of parents working increased from 8% to 78%. The percent of clients using welfare dropped from 40% to 18%. And the percent completing high school rose from 30% to 50%.

Their babies were exhibiting typical development rather than the delayed speech, language, and cognitive skills formerly associated with children of young single parents. With-in the Middlebury Community, the program helped to create a series of supports for othe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who needed help but werenot struggling as dramatically: parenting classes, support groups, transportation services, adult education services, expanded quality child care options, affordable housing options, prevention programs in the schools, and, interestingly, an increasing emphasis on the role of fathers in their children's lives.

By the late 1980;s the program was credited with helping to dramatically reduce the adolescent pregnancy rate in the county. People across the state became less concerned about how to punish or ostracize young women who got pregnant out of wedlock and more worried that children were not being prepared to succeed in school. The Vermont Legislature decided to replicate the Parent/Child Center in every county of the state as a way to stem the tide of adolescent pregnancy which so often had bad outcomes for both mother and child. This concern about the well being of children was accelerated in the 1990's by the riveting research on brain development and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early years on later development. Research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 strong bond between parent and child as the social and emotional foundation for future success; increasing attention was given to strengthening families during the early years. The Parent/Child Center was frequently used as a model for creating these needed services.

An evaluation of the replication sites of the program showed that over a five year period:

- The teen birth rate dropped from 23.4 births per 1,000 girls aged 15-19 to 18.9: a 19.2% decrease.

- The young teen pregnancy rate dropped from 19.2 to 14.1 per 1,000 girls aged 15-17: a 26.5% decrease.
- The percentage of new families at risk (first births to unmarried women younger than 20, with fewer than 12 years of education) dropped from 9.8% to 5.0. A 48.9% decrease.

I had the great good fortune of being invited back to evaluate the program after spending ten years as a policy maker, and noted three sets of important findings:

1. For the parents and children there were dramatic improvements in health status, educational status, family stability, and sense of self-esteem. When asked, the parents attributed this to three elements"
   a. We feel safe
   b. We feel supported
   c. We feel special
2. Whe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de for a successful adaptation of the program into another community, I found the following three key factors
   a. Love (unconditional love of the parents and babies and a sense of high regard among staff members)
   b. Laughter (the critical importance of bringing a sense of fun to the hard work of helping families, and the shared joy of watching the babies grow and develop)
   c. Leadership (the importance of people such as the program directors, board members and key government officials)
3. Impact on community in those regions were Parent/Child Centers had become well established (even though their services were targeted to the most fragile families) I found
   a. Improved services for all families of young children
   b. A renewed sense of pride in community and pride in the way people worked together to care for the children
   c. Reduced abortion rates
   d. Reduced pregnancy rates for teens
   e. Reduced repeat pregnancy rates for teens

It has been so rewarding to be part of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are helping my country reach the goals outlined in the UN Conventions on Women, Children, and Human Rights. I have learned so much about the very important work Koreais doing in addressing this issue and I am convinced that you will create solutions far more quickly than we did in the US. Surely sharing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herent in supporting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s a way to help improve all of our lives.

Thank you again for the amazing opportunity of joining you today.

Cheryl Mitchell, PhD